12. 지역아동센터 운영

2014. 1

Ⅰ. 사업개요 /
Ⅱ. 기준 및 절차 /
Ⅲ. 지역아동센터 운영 /
Ⅳ. 예산지원 및 집행기준 /
Ⅴ. 지역아동센터 평가 /
Ⅵ. 협조사항 /

Ⅰ 사업개요

1. 목적

- 방과후 돌봄이 필요한 지역사회 아동의 건전육성을 위하여 보호·교육, 건전한 놀이와 오락의 제공, 보호자와 지역사회의 연계 등 종합적인 복지서비스 제공

2. 근거

- 아동복지법 제52조 제1항 제8호

3. 연혁

- 2004년 : 아동복지법 개정하여 '지역아동센터(구, 공부방)'를 아동복지시설로 법제화
- 2005년 : 지역아동센터의 양적 증가 및 확대운영
- 2006년 : '지역아동정보센터' 설치·운영을 통해 조사연구사업, 교육사업, 지역아동센터 정보제공사업 등 종합적 운영·지원 추진
- 2007년 : '아동복지교사지원센터(중앙 1개소, 권역 14개소)' 설치하고 아동복지교사 2,700명 지역아동센터에 파견
- 2008년 : 지역아동센터 평가지표 개발 및 시범평가 실시추진
- 2009년 : 전국 3,224개소 지역아동센터 평가 진행 및 컨설팅사업, 종사자 교육 등 역량강화사업 운영
- 2010년 : 지역아동센터 평가 우수시설 운영비 추가지원

- 2011년 : '지역아동센터지원단(중앙 1개소, 시도 15개소)' 통합 설치·운영, 신규 시설진입교육 실시 및 거점형·특수목적형 지역아동센터 지원
- 2012년 : '지역아동센터평가센터' 설치하고 3주기 1회 평가체계 구축, 학교의 주5일제 전환에 따른 지역아동센터 토요운영 지원
- 2013년 : 신규시설장의 현장실습 · 컨설팅 참여의무화, 방과후 돌봄서비스 연계로 통합적 지원 · 관리체계 구축

※ 연도별 지원현황

구 분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지원 개소	500	800	902	1,800	2,088	2,788	2,946	3,260	3,500	3,742	3,989
지원 단가 (만원/월,개소)	67	200	200	200	220	상반기 220 하반기 320	320	370	395	420	433
예산 (억원)	12	73	98	206	282	457	543	695	787	905	979
신고·운영 개소	895	1,709	2,029	2,618	3,013	3,474	3,690	3,985	4,036	4,036	4,036(추정)

4. 지원대상

- 지역아동센터는 만 18세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지원함
- 다만,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가정아동, 차상위계층가정아동·보호대상 한부모가정아동·조손가정아동·다문화가정아동·장애가정아동(아동본인 또는 장애가정 내 아동 포함), 기타 승인아동으로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 대한 우선 보호를 위해 지역아동센터 신고정원의 60% 이상 우선보호아동 비율을 유지

5. 지원내역

- 지역사회 아동보호 실현 : 지역사회 안에서 아동 권리보장과 안전한 보호, 급식 등 지원
- 교육적 기능 : 아동의 학습능력 제고, 학교 부적응 해소, 일상생활 지도, 학교생활 유지 및 적응력 강화
- 정서적 지원 : 아동의 심리·정서적 안정 및 건강한 신체발달 기능 강화
- 문화서비스 제공 : 문화체험 및 다양한 문화경험의 장 제공
- 지역사회연계 : 지역사회자원 발굴 및 지원 강화, 지역사회 내 아동문제에 대한 사전 예방적 기능 및 사후 연계

6. 2014년도 추진방향

- 방과후 돌봄서비스 추진기관 간 연계체계 운영을 통해, 수요자 중심의 효율적인 돌봄서비스 제공과 지역사회 내 통합적 아동 지원체계 구축
- 시설정보시스템 이용 본격화를 통해 재무 · 회계, 후원금 관리 등 투명성을 강화하고 효율적인 지원 관리체계 운영
- 표준 프로그램, 서비스 최저기준 마련 등으로 지역사회에서 방과후 돌봄의 공적 기능이 발휘될 수 있도록 운영수준 제고

7. 사업추진체계 및 운영

가. 추진 체계도

추 진 주 체		기 능 및 역 할
보건복지부	아동권리과	○ 기본계획 수립, 지침 마련, 법령·제도개선 등 사업총괄 ○ 국고보조금 지원, 아동복지교사 예산지원·사업총괄 및 평가 ○ 사업운영 지도·점검, 평가총괄 및 표준화 모델 개발·보급 ○ 시설정보시스템 개편 및 관리 총괄 ○ 방과후 돌봄서비스 추진 기관간의 서비스 연계·조정 등
	지역아동센터 중앙지원단	○ 종사자 교육기획, 프로그램 개발, 컨설팅 등 시설운영 지원 ○ 시도지원단 사업 조정·평가 및 아동복지교사 운영지원 ○ 시설정보시스템 관리지원 및 중앙지원단전산관리시스템 구축·관리 ○ 연구개발 및 시설 평가사업 운영 ○ 홍보, 민간자원 개발·연계 지원 등 유관기관 네트워크 구축 ○ 중앙부처 방과후 돌봄서비스 추진 업무 지원 등
시·도	담당부서	○ 사업계획의 검토·조정 및 국고보조금 예산집행 ○ 관할 지역아동센터 지원사업에 대한 지도, 점검 ○ 아동복지교사 시도별 사업총괄 및 지도점검 ○ 시·도 방과후 돌봄서비스 추진 기관간의 서비스 연계·조정 등
	지역아동센터 시도지원단	○ 시·도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교육, 컨설팅 등 시설운영 지원 ○ 시설정보시스템 관리·평가사업·아동복지교사 교육 등 지원 ○ 시·도 특성화사업 개발 ○ 홍보, 정보관리, 민간자원 개발·연계지원 등으로 네트워크 구축 ○ 시·도 방과후 돌봄서비스 추진 업무 지원 등
시·군·구 담당부서 또는 드림스타트센터		○ 시·군·구 지역아동센터 관리, 예산지원 등 운영 ○ 시·군·구 지역아동센터 이용아동 이용·종결 관리 ○ 아동복지교사 예산집행, 운영관리(채용계약, 배정·노무, DB관리 등) ○ 지역아동센터 지도·점검, 후원금 내역 관리 ○ 시·군·구 방과후 돌봄서비스 추진 기관간의 서비스 연계·조정 등
아동이용시설	거점형 지역아동센터	○ 지역아동센터 운영으로 방과후 돌봄 서비스 제공 ○ 민간자원 공동개발·소규모 영세 시설에 대한 지원연계 ○ 신규시설에 대한 현장실습·운영컨설팅 지원 및 지자체 협조 등
	지역아동센터	○ 지역아동센터 운영으로 방과후 돌봄 서비스 제공 ○ 방과후 돌봄서비스 추진기관 및 지자체 협조 등

나.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을 통한 업무처리

- (정의)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이하 "시설정보시스템"이라 함)은 법률에 근거한 사회복지기관 대상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여 업무처리 지원, 회계투명성 제고 및 정책 기초자료 등 확보
- (설치근거) 사회복지사업법 제6조의 2(사회복지업무의 전자화)
- (시설정보시스템 사용대상 시설) 보건복지부 소관의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 운영비 지원을 받지 않는 지역아동센터의 경우에도 후원금 및 자부담 사용내역 등을 시설정보시스템에 등록·사용 의무

※ ID발급 관련 문의 :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http://www.w4c.go.kr) (☎ 02-3273-4133)

- (업무구성) 이용아동등록 및 승인부터 아동관리, 예산회계관리, 후원금관리, 시군구 보고, 인사급여관리 등 전반적 시설업무는 시설정보시스템을 통해 업무처리

※ 이용자 보고 미 대상 아동의 경우, 보조금 신청대상자에서 자동 제외 처리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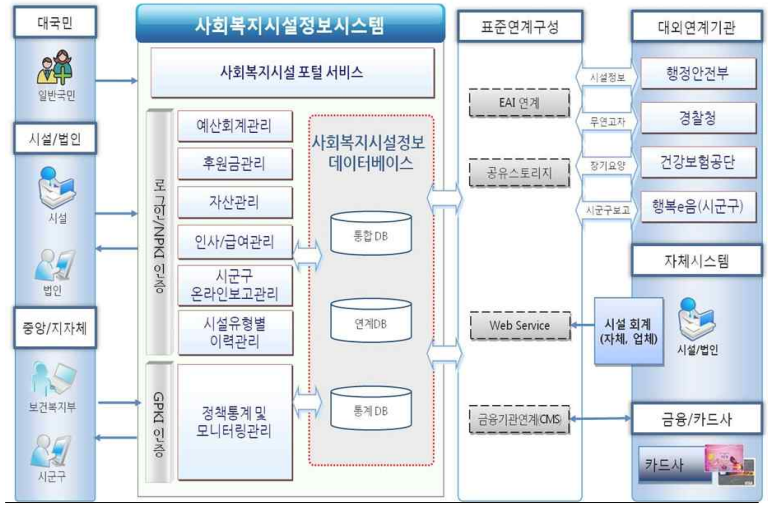

Ⅱ 지역아동센터 기준 및 절차

1. 시설기준

가. 시설입지

(1) 시설입지 조건

- 신규 설치시설 및 이전 시설은 보건·위생·급수·안전·환경 및 교통편의 등을 충분히 고려하고, 시설 50미터 주위에 「청소년보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청소년유해업소가 없는 쾌적한 환경의 부지를 선정하여야 함(아동복지법시행규칙 별표1 : 제1호 가목)
  - 단독대지 내에 시설이나 유해업소가 있는 경우 : 원칙적으로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최단 수평거리 측정
  - 공동주택 내에 시설이나 유해업소가 있는 경우 : 원칙적으로 지역아동센터가 위치한 동 전체 건물이 아닌 해당 지역아동센터의 외벽을 기준으로 최단 수평거리 측정

(2) 설치 가능 건축물

- 지역아동센터는 단독주택, 공동주택,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설치 가능(건축법 시행령 [별표1])

  ※ 제2종 근린생활시설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용도제한에 적합한 범위에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과 제2종 근린생활시설 상호 간의 별도의 변경 신청 없이 용도 변경 가능(건축법 제19조 및 건축법 시행령 제14조)

  ※ 노유자시설은 아동관련시설 중 아동복지시설이 설치 가능함으로, 아동복지시설인 지역아동센터의 노유자 시설 설치가 가능(「건축법 시행령」 [별표1])

- 주택의 경우 주 용도가 생활 거주지인 특성상 지역아동센터 전용시설로의 활용 여부를 반드시 확인(예 : 운영자 개인시설로 사용 금지 등)

나. 시설설치

(1) 시설면적

- 신규 설치시설 및 이전 시설은 사무실·조리실·식당 및 집단지도실을 각각 갖추되, 해당 시설을 모두 합한 면적이 전용면적 82.5제곱미터 이상이고, 아동 1명당 전용면적 3.3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함. 다만, 집단지도실은 2개실 이상을 갖추어야 함 (아동복지법시행규칙 별표1 : 제2호 바목)
  - 화장실은 전용면적에서 제외되며, 다만 이용아동의 안전을 위해 전용공간에 확보하도록 권장함

> ▶ 아동복지시설의 시설기준에 관한 경과조치(아동복지법 시행규칙 부칙 제2조 ②항)
> 이 규칙 시행('12.8.05)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를 신고한 지역아동센터는 별표 1의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름
>
> ※ 다만, 지역아동센터 아동에 대한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현행 시설면적기준을 충족할 것을 권고함

- 지역아동센터의 공간과 시설 및 설비는 센터 전용으로만 사용하여야 하며, 타 복지 사업, 타 기관, 개인용도 등과 공동 사용 불가
- 신규 시설 설치 시 시·군·구는 지역아동센터 재정적 안정 지원 등을 위해 지자체 유휴시설에 대해 무상임대 등에 대해 협조 할 수 있음

(2) 집단급식소 설치

- 1회 50명 이상(종사자 포함) 식사를 제공하는 시설은 시·군·구청 위생관련 부서에 집단급식소로 신고하여야 함(「식품위생법」 제88조, 「동법 시행령」 2조)

  ※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 신고를 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식품위생법 제101조)

- 집단급식소를 설치하는 경우, 영양사 및 조리사 배치(「식품위생법」 제51조, 제52조)

  ※ 집단급식소의 의무(식품위생법 제88조 등) : 식중독 등 위생관리 철저, 영양사 업무방해금지 및 위생관리사항 준수 등

2. 종사자기준

가. 종사자 배치기준(「아동복지법시행령」 별표 11)

- 아동 30명 이상 : 시설장 1명, 생활복지사 2명(아동 50명 이상인 경우 1명 추가)
- 아동 30명 미만 10명 이상 : 시설장 1명, 생활복지사 1명
- 아동 10명 미만 : 시설장 1명

※ 아동10명 미만 시설 배치기준이 삭제됨에 따라 '12.8.5일부터는 10인 미만 시설의 신규 설치 불가 (「아동복지법시행령」 제52조 및 별표11, 부칙 제4조)

나. 종사자 자격기준

- 지역아동센터 종사자는 직종별 자격기준(시설장, 생활복지사)을 갖추어야 함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52조 및 [별표12], 부칙 제3조)

※ 종전 규정('12.8.4 이전)인 사회복지사 3급 자격으로 근무하고 있는 시설장

- '18.8.31까지 2급 이상 자격 취득 후 아동과 관련된 사회복지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 요건을 반드시 갖추어야 함.(2급 이상 자격을 미취득하거나 경력요건 3년 이상을 갖추지 못하면 '18.9.1부터 시설장 자격 상실)

※ 종전 규정('12.8.4 이전)인 사회복지사 3급 자격으로 근무하고 있는 생활복지사

- '15.8.31까지 2급 이상 자격을 취득하여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함(2급 이상 자격을 미취득하는 경우 '15.9.1부터 생활복지사 자격 상실)

▶ 종사자 자격기준 유의사항 안내
- 사회복지사 3급 자격증 소지자로 3년 이상 사회복지사업의 실무경험이 있는 자는 사회복지사 2급 자격을 '한국사회복지사협회'에서 신청하여 발급 가능(신청주의)

- 아동복지법시행령에서 종사자(시설장, 생활복지사) 자격기준 적용 유예기간까지 종전의 종사자(시설장, 생활복지사)는 타 지역아동센터 채용시 동일 직종(시설장→시설장, 생활복지사→생활복지사)의 자격이 있는 것으로 간주함

※ 보건복지부 아동권리과-3345('12.9.10)호 : 아동복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유권해석 통보

직종별	자 격 기 준
시설장	1.「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2급 이상의 자격 취득 후 아동과 관련된 사회복지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학대아동보호사업과 관련된 기관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7급 이상 공무원으로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행정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4.「의료법」에 따른 의사·한의사 또는 치과의사 면허 취득 후 3년 이상 진료 경력이 있는 사람 5.「정신보건법」에 따른 정신보건전문요원 자격 취득 후 사회복지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6.「영유아보육법」에 따른 보육교사 1급 자격 취득 후 아동과 관련된 사회복지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7. 유치원, 초등학교 또는 중등학교 교사 자격증 취득 후 사회복지사업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8. 직업훈련교사, 간호사, 영양사 자격 취득 후 사회복지사업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생활복지사	1.「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2급 이상 자격이 있는 사람 2. 유치원, 초등학교 또는 중등학교 교사 자격이 있는 사람 3.「영유아보육법」에 따른 보육교사 1급 자격이 있는 사람

시설장 및 종사자의 결격사유

□ 시설장의 경우

○ 사회복지사업법 제7조 제3항

1. 미성년자
2.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3.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4.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5.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7. 제5호 및 제6호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사업 또는 그 직무와 관련하여「아동복지법」제71조,「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40조부터 제42조까지 또는「형법」제28장·제40장(제360조는 제외한다)의 죄를 범하거나 이 법을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다. 징역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의 성폭력범죄(「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제1항제1호는 제외한다) 또는「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의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확정된 후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 제2항

1. 제7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제22조에 따른 해임명령에 따라 해임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 사회복지분야의 6급 이상 공무원으로 재직하다 퇴직한 지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중에서 퇴직 전 3년 동안 소속하였던 기초자치단체가 관할하는 시설의 장이 되고자 하는 사람

※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자원과-2798('13.9.04)호 : 「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 제2항 제3호에 대한 해석안내
- '사회복지분야 6급 이상 공무원으로 재직하다 퇴직한'의 적용대상자와 그 적용대상 업무 범위는 공무원 퇴직일을 기준으로 과거 3년(공로연수 파견기관도 포함)의 기간내에 기초자치단체(시·군·구)에서 사회복지분야 6급이상 공무원으로 재직한 자로서, 그 3년 기간내 사회복지분야 6급 이상 공무원으로서의 근무경력기간에 상관없이 적용함

□ 종사자의 경우

○ 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의2 제2항
1. 제7조제3항 제7호 또는 제8호에 해당하는 사람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종사자로 재직하는 동안 시설이용자를 대상으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

○ 아동복지법 제17조(금지행위) 및 제71조(벌칙)

다. 종사자 상근기준

(1) 종사자 상근의무

- 지역아동센터의 종사자 배치 기준은 이용아동 수에 필요한 최소한의 인력 기준이므로, 종사자(시설장, 생활복지사)는 상근의무를 준수해야 함
- 상근의무란, 휴일 기타 근무를 요하지 않은 날을 제외하고 근무계획 하에 매일 소정의 근무시간 중 상시 그 직무에 종사하여야 하는 것을 말함
  - 상근시간 : 지역아동센터 필수운영 시간을 포함하여 8시간 이상 근무

(2) 상근의무에 따른 시설장 겸직 제한 관련

- 시설장의 겸직은 지역아동센터 상근시간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허용

※ 도서·벽지·농어촌 지역(읍·면)에 위치하여 시설장 수급에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시·군·구청장이 아동의 주 이용시간에 근무 가능정도 등을 고려하여 겸직가능 여부 판단

- 시설장이 겸직하는 경우 근무계획서를 작성하여 지자체에 사전 신고하고, 근무상황부를 비치하여 출강 등 외출시 반드시 근무상황부에 기재

※ 겸직 사전 미신고, 근무상황부 미비치 및 허위 기재시 인건비 등 보조금 환수조치

- 다음 각 항에 해당할 시에는 원칙적으로 겸직 제한

① 근로계약서, 근무계획서, 실질적인 근무형태 등에 따라 겸직 시 근무시간의 지속적인 중첩이 불가피한 경우

※ 명예직, 겸임교수, 시간강사 등 비정기적 업무 겸직도 운영시간을 준수하는 범위에서 허용

② 상업, 공업, 금융업, 기타 영리를 추구함이 현저한 업무에 종사하여 상근 시간에 정상적인 시설운영이 불가능한 것으로 시·군·구청장이 판단하는 경우

③ 타 법령에 의해 겸직이 제한되는 경우 (영유아보육법, 지방자치법 등)

- 시·군·구청장은 시설장의 겸직활동 사전 신고시 겸직 제한 여부 심사
  - 지자체는 정기적으로 종사자의 상근의무 준수 여부 등에 대한 점검 철저
  - 위반사항 적발 시 관련 법령에 따른 행정처분, 보조금 환수 등 조치 이행

라. 종사자(이하 '시설장' 포함) 인건비보조금 지급 상한기준(시행일 : 2002년 1월 1일)

- 정부(지자체)에서 시설장 및 종사자의 인건비를 지원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아래의 연령까지만 정부보조금 인건비를 지원하고, 이를 초과하여 계속 근무하는 종사자의 인건비는 시설이 자체적으로 지급하여야 함
  - 지급상한 : 시설장 65세, 생활복지사 60세

※ 정부의 인건비 지급 상한 기준일 : 시설장 또는 종사자의 생일이 1월에서 6월사이인 경우 지급상한일자 6월 30일, 시설장 또는 종사자의 생일이 7월에서 12월사이인 경우 지급상한일자 12월 31일

※ 예시1) 시설장 생년월일이 1949.4.16 인 경우 지급상한일 : 2014.6.30.

※ 예시2) 생활복지사 생년월일이 1954.8.13 인 경우 지급상한일 : 2014.12.31

⇒ 위 지급 상한기준은 종사자의 신분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가 아니라 정부예산의 지급 기준이므로, 업무수행 능력이 없거나 종사자가 비리를 자행할 경우 등 근로기준법상 해고 사유가 발생할 경우 시설에서 근로계약, 취업규칙 등에 의거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음

※ (시설정년제 권고) 사회복지시설은 근로계약, 취업규칙 등에 따라 시설장 및 종사자의 정년을 정할 수 있으므로, 시설 사유화의식 탈피 및 조직쇄신 차원에서 정년제 실시를 권고함

3. 이용아동기준

- 우선 보호아동 유지 :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 대한 우선 보호를 위해 지역아동센터 신고정원의 60% 이상 우선보호아동 비율을 유지하도록 함

▶ **우선보호아동 범위 및 우선순위**

①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가정아동

② 차상위계층가정아동, 보호대상 한부모가정아동, 조손가정, 다문화가정아동, 장애가정아동(아동 본인 또는 장애가정 내 아동 포함)

③ 기타 승인아동 : 전국 평균소득가구 70%이하(가구내 건보료 확인)가구 중, 지역사회에서 보호와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아동으로 시·군·구청장 승인아동

가구원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1인	1,076천원	32,550	12,299	32,941
		34,682	13,105	35,099
2인	2,038천원	61,372	53,111	62,121
		65,392	56,590	66,190
3인	2,997천원	90,059	97,485	91,149
		95,958	103,870	97,119
4인	3,385천원	101,447	113,256	102,607
		108,092	120,674	109,328
5인	3,529천원	106,338	120,187	107,731
		113,303	128,059	114,787

※ 6인이상 : 2014년도 지역아동센터 운영매뉴얼 참고

※ 건강보험료 하단금액은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포함한 금액임

▶ **일반아동 범위 :** 맞벌이 가구 등 방과후 돌봄이 필요한 아동

4. 운영기준

가. 운영시간

- 운영시간은 하루 8시간 이상 주 5일 이상을 원칙으로 함

- 학기중 및 방학·공휴일의 기본운영시간은 아래와 같이 하고, 센터별 여건 등에 따라 운영시간의 조정이 필요할 경우 지자체에 보고 후 변경 운영 가능

▶ **필수 운영 시간 (기본 운영시간 8시간)**

· 학기 중 : 14:00~19:00 (필수 운영 시간)

· 방학(단기방학 포함) 및 공휴일 : 12:00~17:00 (필수 운영 시간)

※ 필수 운영 시간을 포함하여 8시간 이상 운영하여야 함

- 토요일, 공휴일 등의 운영은 지역여건과 센터 실정에 따라 자율적으로 결정하되, 운영시에는 자원 봉사자 등을 적극 활용하여 아동이 방임되지 않도록 조치

- 근로자의 날(5.1)은 아동 이용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종사자 배치를 조정하여 운영하되, 근로자의 날 근무자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따라 휴일 근무수당을 지급하거나 대체 휴무 가능

- 태풍 등 재해로 시·군·구 내 휴교령이 발생한 경우 지역아동센터는 휴무를 원칙(운영일수에는 포함)으로 하고, 휴무에 대한 사항을 보호자, 이용아동 등에게 알려야 함

나. 운영 프로그램

영역	세부영역	세부프로그램
보호	생활	일상생활관리
		위생건강관리
		급식지도
	안전	생활안전지도
		안전귀가지도
		5대안전의무교육
교육	학습	숙제지도
		교과학습지도
	특기적성	예체능활동(미술/음악/체육)
		적성교육(진로/독서/요리/과학등)
	성장과 권리	인성· 사회성 교육
		자치회의 및 동아리 활동

영역	세부영역	세부프로그램
문화	체험활동	관람·견학
		캠프·여행
	참여활동	공연
		행사(문화/체육 등)
정서지원	상담	연고자 상담
		아동 상담
	가족지원	보호자교육
		행사·모임
지역사회연계	홍보	기관홍보
	연계	인적연계
		기관연계

5. 시설설립 및 휴·폐지 절차

가. 시설설립

- 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지역적 여건, 지역아동센터 설치기준 등에 관하여 관할 시·군·구청장과 사전 협의 후 설치 검토

▶ 보조금 지원기준에 관한 사전 안내사항
- 아동복지법시행령 제54조(비용보조)에 의거 시설 운영에 필요한 비용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평가 등 해당 시설의 운영실적을 고려하여 보조할 수 있음
- 따라서 신규시설 지원예산의 미확보, 운영실적이 미흡한 경우 등에는 상당기간 자부담 또는 지역내 후원 등을 통한 자체 운영이 불가피함

※ 신규지원시설에 대한 지원시기는 진입평가를 통과한 시설의 신고일 기준 24개월 이후로, 신고일이 포함된 월을 기준으로 지원
(예) 신고일 '12. 3.10일자 시설이 진입평가 통과시 운영비 지원은 '14.3월부터 운영비 지급

- 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아동복지시설설치신고서"와 관련 서류를 구비하여 관할 시·군·구청장에게 신고하며, 관할 시·군·구청장은 설치 신고를 받고 심사를 거쳐 신고수리 후 아동복지시설 신고증을 교부함

※ 관련 서류 중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에는 지역아동센터의 적정한 운영을 담보하여 이용아동에게 돌봄서비스가 충분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재정운영계획 및 재원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첨부필요

※ 재정운영계획에는 신고시설과 동일한 규모의 운영비 지원액에 상응하는 운영비(최소24개월) 및 월 임차 시설의 경우 시설운영기간(최소60개월) 중 임대료 확보방안을 반드시 포함할 것

- 신고서를 받은 시·군·구 담당 공무원의 신고 심사

① 지역적 특성, 아동 수요, 입지 조건, 관련규정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지역사회 내 시설의 균형 있는 설치 및 재원의 효율적인 배분 등을 모색

※ 시·군·구에서는 아동들의 돌봄서비스 욕구조사 결과 등을 바탕으로 지역아동센터 수급계획을 수립하여 시설의 적정 설치 유도 및 수급균형 도모

② 신고대상 시설이 지하나 반지하, 5층 이상인 경우에는 아동의 안전을 위해 시설 설치 지양(권고사항)

③ 「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제2항 및 제7조제3항, 「아동복지법」 제17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내지 제41조, 제42조, 「형법」 제28장 유기와 학대의 죄 및 제40장 횡령과 배임의 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제1항에 의거 시설의 장이 성범죄 경력이 있는 경우 등 시설의 장이 될 수 없는 자의 신고수리를 유보하고, 생활복지사는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제1항에 의거 성범죄경력이 있는 경우 채용을 배제하도록 함

④ 건축법,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등 시설물 기준 준수 확인

- 신고증 교부 후, 신규시설 운영컨설팅 및 진입교육 의무 실시
  - 시·군·구는 신규시설 신고증 교부 후 10일 이내에 시도지원단에 컨설팅 의뢰서 공문 송부
  - 시도지원단은 신규시설에 대한 운영컨설팅 계획 수립 후 신규시설에 통보하고 컨설팅 진행(컨설팅 15시간이상, 현장실습 20시간 기준)
  - 시도지원단은 거점센터에 신규시설 현장실습 의뢰서를 공문으로 송부
  - 거점센터는 신규시설 현장실습기관으로서, 현장실습 종료 후 현장실습 결과 공문을 시도지원단으로 송부
  - 시도지원단은 신규시설 신고 후 3개월 내 운영컨설팅을 완료한 후 10일 이내에 시군구 및 중앙지원단에 보고(신규 시설이 운영컨설팅을 받지 않는 경우 진입평가를 받을 수 없음)
  - 중앙지원단은 진입교육 대상자에 대한 진입교육을 연중 실시

나. 시설 휴지, 폐지, 재개

- 시설 폐지 또는 휴지하거나 그 운영을 재개하고자 할 때에는 아동복지시설(휴업, 폐업,재개) 신고서(「아동복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 서식) 및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휴업·폐업·재개 3개월 전까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아동복지법」제51조, 「아동복지법 시행규칙」제25조)
- 지역아동센터 휴지는 최대 1년임. 1년 이상 휴지(휴업)상태일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공문으로 재개권고를 요청해야 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개하지 않을 경우 그 시설의 개선, 사업정지, 시설장의 교체를 명하거나 시설폐쇄를 명할 수 있음(「사회복지법 제40조」)

※ 1년 이상은 연속된 시간에 있어서의 1년을 의미

다. 시설 변경(시설 명칭, 시설장, 소재지, 정원)

- 시설의 설치신고를 한 자(대표자)가 시설의 명칭, 시설의 장, 소재지 또는 정원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는 변경신고서(「아동복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23호 서식) 및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아동복지법 시행규칙」제23조)
- 시설의 설치신고를 한 자(대표자)는 시설의 장에 대해 변경 신고는 가능하나, 시설의 운영주체(대표자)에 대한 변경신고는 불가함. 운영주체 변경시 시설 폐지 신고 후 신규 시설로 신고하여야 하며, 이 경우 예산 지원은 신규 시설과 동일하게 처리(개인 시설의 대표와 시설장이 동일할 경우, 시설장 변경은 가능하나 대표자 변경은 불가)

라. 운영주체 변경에 따른 운영비 지원 특례

- 시설운영주체(대표자) 변경시설은 시설폐지 후 신규시설로 신고처리하며, 운영비는 신규시설과 동일한 지급기준을 적용
- 단, 종사자 및 이용아동의 변동이 없는 경우에 한해 다음의 운영주체 변경에 대해서는 신규시설로 신고 처리하더라도 운영비 지원 특례를 적용하며, 운영비는 신고일이 포함된 익월부터 지원

변경 주체	운영비 특례사항
법인 또는 개인 → 타 법인으로 변경시 (예) 법인A→법인B 또는 홍길동→법인B	- 운영비 동일 지원 * 법인인 경우로 한정하고 비영리민간단체는 제외 * 실제 운영주체가 법인임을 증명하는 근로계약서, 대표자 발령공문 등을 심사
타 법령에 의한 운영주체 변경시 (선거당선, 사망 등)	- 운영비 동일 지원
개인 또는 법인 → 개인으로 변경 (예) 홍길동→ 김철수 또는 법인A→홍길동	- 기존 지원 운영비의 50%를 2년간 지원 * 단, 운영주체 변경 후 1년간 사업실적에 대한 심화평가 결과 최저기준점(60점) 이상인 경우, 예산의 범위내 100% 지급 가능(평가센터는 심화평가 대상 선정시 별도 조치)

Ⅲ 지역아동센터 운영

1. 아동관리

가. 아동권리보장

- 생존권 : 생명을 유지하고 최상의 건강과 의료혜택을 받을 권리로서 지역아동센터 이용아동에 대해 식생활, 보건, 안전이 보장되어야 함
- 보호권 : 차별대우로부터 보호, 학대 및 방임으로부터의 보호, 장애아동, 고아, 난민 아동을 보호하는 것으로서, 지역아동센터에서는 아동에 대해 체벌금지, 문제행동에 대한 지원, 특별한 아동에 대한 보호을 제공하여야 함
- 발달권 : 교육받을 권리와 아동이 신체적·정서적·도덕적·사회적으로 성장하는데 필요한 생활을 누릴 권리를 말하며, 지역아동센터는 아동에 맞는 교육 제공, 인간관계 훈련, 문화활동 기회를 제공하여야 함

- 참여권 : 아동이 자신의 의사를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권리로 지역아동센터는 아동의 개인생활에 대한 의사결정(종교행사 참여의 아동 선택권 존중 등), 사생활 보장, 시설운영 참여, 지역사회와 관계를 위한 적극적 행사 참여를 보장하여야 함

나. 아동등록절차

- 읍·면·동장 또는 지역아동센터 등은 돌봄서비스 희망 아동에 대해 해당 보호자가 작성 한 「방과후 돌봄서비스 제공 신청서(서식 3호)」와 기타 증빙서류(건강보험료 확인서류 등)를 받아 시군구담당부서에 접수하여야 함

<지역아동센터 이용절차>

절차	지역아동센터, 읍·면·동, 학교 등		시군구 담당부서				지역아동센터	시군구 담당부서
업무 처리 절차	공동 수요 조사	→ 수요자 명부 송부	→ 접수	→ 돌봄필요 여부 등 자격확인	→ 서비스 제공결정		→ 서비스 제공	→ 사후관리 또는 확인

- 시・군・구 담당부서는 신청서 및 기타 증빙서류를 참고하여 돌봄서비스 및 기타 욕구에 대한 조사·상담 등 실시

  - 돌봄서비스 제공기관(지역아동센터) 이용아동 배치 현황, 이용자 수요, 시설이용 접근성, 아동등록 우선순위 등을 감안하여 돌봄서비스 제공기관을 지정하고, 「돌봄서비스 결정통지서(서식 4호)」를 지역아동센터에 통보

- 지역아동센터는 돌봄서비스 이용 결정된 아동을 시설정보시스템에 등록・보고하고, 시군구는 이용승인 ・ 관리

- 지역아동센터는 이용아동이 집중사례관리(고위험군 아동)로 분류된 경우 드림스타트 또는 지역사회 전문기관에 의뢰하고, 지속적이며 통합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해 사례관리기관에서 요청하는 아동정보 등을 제공하고 협조

※ 방과후돌봄 연계 공동수요조사 아동의 등록절차 (접수단계)

- 드림스타트(드림스타트가 없는 경우 지역아동센터 담당부서)는 시·군·구 돌봄운영협의회(공동수요조사)에서 조사된 지역아동센터 돌봄서비스 수요자 명부를 송부받고, 지역아동센터 업무담당은 해당 보호자로부터 「방과후 돌봄서비스 제공 신청서(서식 3호)」와 기타 증빙서류(건강보험료 확인서류 등)를 받음

절차	시·군·구 돌봄운영협의회		드림 스타트	시군구 담당부서		지역아동센터	시군구 담당부서
업무 처리 절차	공동 수요 조사	→ 수요자 명부 송부	→ 접수	→ 돌봄필요 여부 등 자격확인	→ 서비스 제공결정	→ 서비스 제공	→ 사후관리 또는 확인

- 출석관리

  - 시설장은 이용아동 등록·관리를 위해 출석부(서식 2호)를 비치·관리하여야 함
  - 출석 확인은 자필서명, 출석카드 등 출석확인이 가능한 방법을 활용
  - 타 서류(급식 확인 서류 등)로 출석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대체 가능

※ 급식카드 또는 출결카드를 활용하여 출석여부를 시스템으로 확인 가능할 시 출석부 등의 서류는 비치하지 않아도 됨

다. 아동안전교육 실시(아동복지법 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

- 시설장은 아동의 안전에 대한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교육계획 및 교육실시 결과를 시·군·구청장에게 매년 1회 보고하여야 함

  - 성폭력 및 아동학대 예방, 실종·유괴의 예방과 방지, 약물의 오남용 예방, 재난대비 안전, 교통안전

- 다만, 시설장은 이용 아동 중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등학교에서 교육을 받은 아동에 대해서는 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음

- 아동복지법 제31조를 위반하여 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동법 시행령 제58조 과태료 부과기준(1차 위반 100만원, 2차 이상 위반 시 200만원)에 의해 처분됨

- 지자체는 시설 점검 시 교육계획 수립 및 실시 여부 확인 조치

※ 아동안전 예방교육은 아동안전사이버교육센터(http://www.childsafedu.go.kr)를 통해 아동복지법상 아동안전 5대 의무교육 및 응급처치 요령 등 온오프라인 교육 자료 제공

라. 사례관리 실시

- 사례관리란 클라이언트의 욕구에 기반해 지역사회 서비스 및 자원체계를 개발 연계하여 개인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이용등록·관리아동 전체를 대상으로 사례관리를 실시함

- 이용등록 아동에게 초기사정을 진행 후, 일반사례관리 아동과 집중사례관리 아동으로 분류함

  - 일반사례관리는 이용아동 중 집중사례관리 대상이 아닌 모든 아동을 대상으로 하며, 지역아동센터 5개 프로그램을 통해 전반적인 서비스 내용을 기록·관리함

  - 집중사례관리는 고위험군 아동을 대상으로 하며, 지속적이며 통합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해 지역사회 전문기관(시군구 또는 드림스타트센터 등)으로 의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다만, 지역사회 내에 사례관리를 의뢰할 수 있는 기관이 없는 경우, 지역아동센터에서 직접 집중지원아동에 대한 사례관리 실시

- 지역아동센터는 필요시 아동에 대한 재사정을 통해 아동에게 맞는 사례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함

<(A)일반아동 사례관리 진행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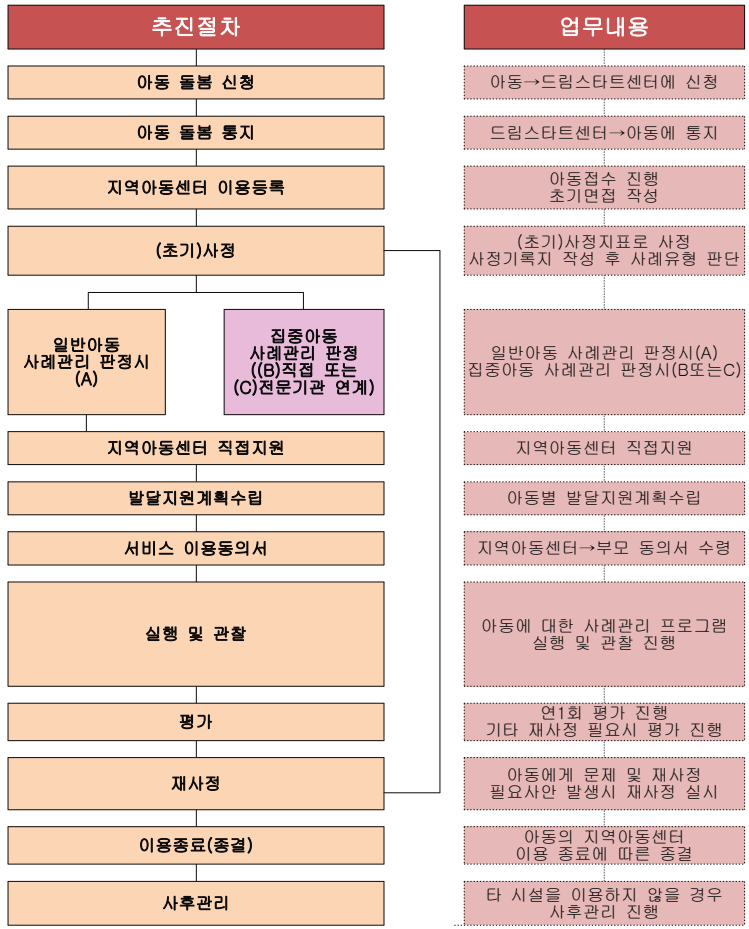

<(B)집중아동 사례관리(직접지원) 진행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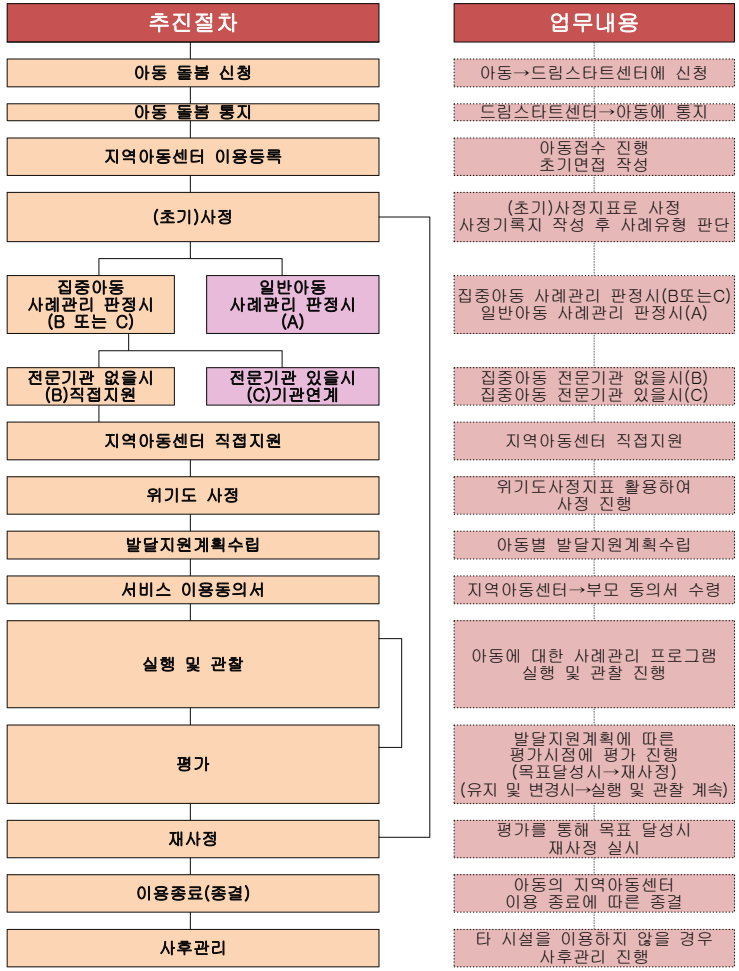

<(C)집중아동 사례관리(전문기관 연계) 진행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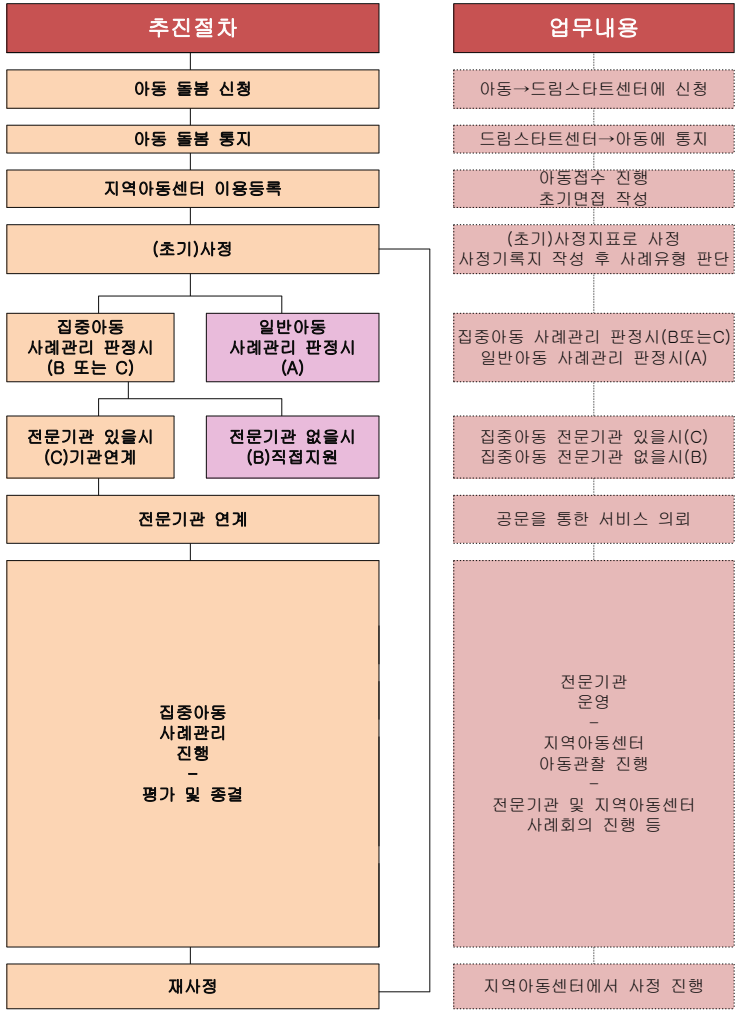

마. 아동 발굴 및 지원

- 지자체 및 지역아동센터는 지역 내 빈곤·학대·방임 가정, 한부모·조손·소년소녀 가정, 맞벌이·이혼가정의 아동·다문화 가정 아동 등 돌봄이 필요한 아동들을 적극 발굴 · 보호하여 아동방임을 예방할 것

- 지역아동센터 운영자는 이용아동 중 장애·발달장애아동 등 특별한 서비스가 필요한 아동이 있는 경우에는 관할 시·군·구 또는 드림스타트에서 사례관리를 실시하고 문제해결을 위한 전문병원 및 장애아동이용기관(시설)과 연계·협력(상담, 치료 등)하여 필요하고 적절한 서비스가 이루어지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함

2. 종사자 관리

가. 종사자 채용

- 정부에서 인건비를 지원하는 시설의 종사자 신규채용은 직위에 관계없이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함(2014년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 시설 등 홈페이지, 소식지 등에 15일 이상 채용 관련된 사항을 공고한 후에 법인 및 시설 내규 등에 의해 채용

- 운영주체(대표자)는 시설장을 제외한 종사자가 될 수 없고, 대표자와 친인척관계에 있는 자를 종사자로 채용할 때에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고 시·군·구에 보고할 것

- 지역아동센터는 종사자 채용, 퇴직 등 임면 시에는 채용 즉시 그 내용을 지자체에 통보하여 원활한 종사자 관리운영에 협조
  - 지역아동센터는 종사자 채용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3항에 따라 채용 예정자의 성범죄 경력을 조회(관할 경찰서)하고, 지자체에 임면 보고 시 함께 보고
  - 성범죄 경력 조회가 필요한 종사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 중인 자 또는 취업하려 하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려는 자를 말함(「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3항)

  *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는 자는 자원봉사자를 제외하고, 대가(급여)를 받고 지역아동센터에 종사하는 자 모두를 포함(조리사, 영양사, 프로그램 강사, 사회복무요원, 일자리사업 인력 등)
  - 성범죄 조회 결과 통보 전까지 종사자의 지역아동센터 근무 제한

- 임면 보고를 받은 시·군·구청장은 자격 조건이 필요한 종사자의 자격 적격성(사회복지사업법 제7조, 제35조 등)을 확인

- 지역아동센터는 종사자의 주민등록등본, 채용 신체검사서, 자격증 사본 등 필요한 서류를 지역아동센터에 보관 · 관리

나. 종사자 복무관리

- 지역아동센터 종사자의 처우 개선을 위하여 종사자(생활복지사 우선)에 대한 인건비 지급 최저기준을 적용함(권장사항)
  -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인건비 지급 최저기준은 '13년 사회복지이용시설(복지관) 종사자 보수체계(안) 별표 5(복지관직원-관리직) 봉급지급 기준표 3급 1호봉 기준을 적용함(권장사항)

<별표5 복지관직원-관리직 봉급지급 기준표('13년 기준표)>

(단위:천원)

호봉	1급	2급	3급	4급(고용직)
1	1,588	1,517	1,446	1,372

※ 최저기준은 경력인정 및 승급에 따른 호봉변경은 인정하지 않고 1호봉을 기준으로 함. 단, 운영주체의 후원금 등 예산 범위에 따라 경력인정 및 승급 등은 자체적으로 적용이 가능하나 운영비 사용제한 범위를 적용받음 (예: 경력자 근속수당 등 지급가능)

※ 생활복지사(시설장 제외)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일정비율 내에서 차감지급 가능

- 지역아동센터는 종사자에 대하여 국민건강보험 등 사회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퇴직금 적립 등 관련 법령 등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함

다. 종사자 교육 (※ 세부사항은 별도 공문 시행 예정)

- 지역아동센터 종사자들에게 대한 교육 참여를 통해 전문역량 강화 및 직무능력 향상을 도모하도록 함

- 지역아동센터 종사자교육은 의무과정(의무교육·진입교육), 선택과정(실무교육·센터 자체교육)으로 구분되며, 각 세부교육 내용은 다음과 같음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교육>

구분	의무과정		선택과정	
	의무교육	진입교육	실무교육	센터 자체교육
목적	종사자 역량강화 도모	신규시설장 기초운영역량 강화	실무교육을 통한 실무역량 향상	개인별 맞춤형 역량강화 도모
대상	시설장 생활복지사	신규시설장 (2013~14년)	시설장 생활복지사	시설장 생활복지사
교육 시기	연중 (시도별 상이)	년 1회	연중	연중
교육 시간	집합 5시간, 온라인 20시간	집합 15시간, 온라인 45시간, 현장실습 20시간, 컨설팅 15시간	과정별 3~4시간 (개설교육별 상이)	자율
교육 내용	운영지침 아동관리 시설운영 등	지역아동센터 이해 시설운영 회계관리 등	사례관리 회계관리 기타 실무교육 등	아동이해 및 권리 프로그램 운영 업무규정교육 등
운영 주체	집합-시도지원단 온라인-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한국보건복지 인력개발원	시도지원단	지역아동센터

라. 종사자 신고의무

- 지역아동센터 종사자는 아동복지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해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이므로 누구든지 아동학대를 알게 된 자는 각 지방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즉시 신고

※ 아동학대 신고 및 상담전화 : 1577-1391(아동학대신고전화), 국번없이 129(보건복지콜센터)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미성년자를 보호하거나 교육 또는 치료하는 시설의 장 및 관련 종사자는 자기의 보호·지원을 받는 자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부터 제9조까지, 「형법」 제301조 및 제301조의2의 피해자인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함

- 아동학대를 신고하지 않을 경우 아동복지법 제75조 2항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므로 종사자들이 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관리

3. 시설안전관리

가. 보험가입(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의 3(보험가입 의무))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건물화재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화재보험은 건물과 비품 등 지역아동센터 설비 모두를 대상으로 가입(미가입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아동 전원을 대상으로 각종사고에 대해 아동의 안전을 보장하는 보험 의무 가입

- 야외현장체험 프로그램 시에는 만일의 사고에 대비하여 여행자 보험 가입

- 보조금으로 가입하는 모든 보험은 소멸형(적립금이 없는 보험)으로 가입

나. 안전점검(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의 4(시설의 안전점검 등))

- 시·군·구는 시설장으로 하여금 매 반기 시설에 대해 정기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고 안전에 문제가 있을 시 수시안전점검을 실시한 후 그 결과를 시·군·구청장에 보고토록 함

- 시·군·구청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시설의 운영자에게 시설의 보완 또는 개·보수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시설의 운영자는 요구에 따라야 함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안전점검, 시설의 보완 및 시설의 개보수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 가능

- 시설안전점검을 수행하지 않을 경우 300만원이하 과태료 부과(사회복지사업법 제58조)

- 지역아동센터 종사자는 아동의 실내외 활동 시 안전을 위해 아동을 철저히 보호·감독해야 하며,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여 응급처치요령 습득, 구급약 및 비상의약비치 등 아동의 안전 확보를 위해 시설 및 환경을 조성·관리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및 제19조에 의거 소화설비(수동식소화기, 투척용소화기 등) 등을 기준에 맞게 설치

4. 재정관리

가. 재정관리 원칙

- 회계연도의 모든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모든 지출을 세출로 하며, 세입과 세출은 모두 예산에 계상하여야 함(「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제2장 제1절 제7조, 제8조)

- 예산은 정부보조금과 후원금, 법인 전입금, 자체 부담금, 이용료로 구성되며, 지역아동센터 운영과 관련된 직접비용으로 투명하게 사용·관리함

  ※ 시·도 및 시·군·구는 지역아동센터 예산 집행 현황을 정기적으로(필요한 경우 수시) 지도·점검

  - 계정별 통장을 별도로 구비하여 관리함

  ※ 정부보조금 통장(운영비와 지자체 급식비 분리 운영), 후원금 통장, 법인 전입금 및 자체 부담금 통장, 이용료 통장, 퇴직금 적립 통장 등을 별도 구비하고, 법인 후원금 통장을 제외한 모든 통장은 시설명(또는 시설명+시설장명 병기)으로 만들어야함

- 예산의 적절한 관리와 정확한 집행을 위해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을 의무적으로 활용하고, 필요한 지출 증빙서류 보관

  - 장부관리는 총계정원장, 현금출납장, 지출분개장 기입이 원칙이나, 시설정보시스템 사용시 매월 마감후 관련 서식을 출력 비치함으로 대체 할 수 있음

  ※ 사회복지시설 보조금전용카드 사용의무 시행

- 인건비는 본인 통장 입금을 원칙으로 함
- 지출은 예금통장에 의하거나 전자거래기본법에 의한 전자거래로 행함

  - 상용경비 또는 소액의 경비 지출이라도 1만원 이상 지출시 신용카드를 사용하거나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아 지출

  ※ 현금영수증 발급이 가능한 곳(가맹점)에서는 1원 이상 집행시 현금영수증 발금 가능

  - 지역특성상 신용카드 사용이나 현금영수증 발급 등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시·군·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 한해 간이영수증 또는 현금지출이 가능하며, 이 경우에도 그 확인이 가능한 증빙서류 구비

  - 농어촌지역이나 카드 미가맹점인 경우에는 5만원 이상 집행 시 온라인(On-line)입금 활용하고, 그 확인이 가능한 증빙서류 구비

- 결산은 연1회 하고, 정산은 분기별 또는 반기별 정산으로 처리할 수 있음

  - 지역아동센터는 연간 사업계획에 따른 계절적 특성을 반영하여 기 지원된 프로그램 예산 내에서 연도내 조정하여 지출할 수 있음

나. 이용료

- 지역아동센터는 지역사회의 저소득아동과 가정여건이 어려운 아동이 주로 이용하는 시설이므로 서비스 이용료는 무료를 원칙으로 함
- 지역 여건 및 센터별 사정 등에 의해 이용료 수납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시설장은 운영위원회와 보호자의 사전 동의를 거쳐 수납 가능

  - 이용료 한도는 월 5만원이며, 사이버 수업료, 개별 학습지, 교재비, 야외현장 체험비 등의 실비 이용료로 한정

  - 이용료를 받는 경우에는 해당 아동의 소득 상태, 이용료 책정 근거, 월별 수납액을 운영비 신청시에 지자체에 보고하여야 함

- 이용료 수납 대상

  - 이용료는 일반아동에게만 받을 수 있으며, 우선보호아동*은 이용료 수납을 금지

  * ①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가정아동, ② 차상위계층가정아동, 보호대상 한부모가정아동, 조손가정, 다문화가정아동, 장애가정아동(아동본인 또는 장애가정 내 아동 포함) ③ 기타 승인아동

다. 후원금

- 후원금은 아무런 대가 없이 무상으로 받은 금품 또는 기타의 자산으로 수입·지출 내용과 관리에 명확성이 확보되도록 함(사회복지사업법 제45조, 동법 제58조)

● 후원금영수증 발행 등

-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제41조의4에 의해 법인의 대표이사와 시설의 장은 후원금을 받은 때에는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0호의2에 따른 기부금 영수증 서식 또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82조 제7항 제3호의3에 따른 기부금 영수증 서식에 따라 후원금 영수증을 후원자에게 즉시 발급하여야 하며, 영수증 발급목록을 별도의 장부로 작성·비치
- 시설에서는 후원금 수입·사용 결과를 일괄 확인할 수 있는 별도의 후원금 관리 대장을 기록·비치
-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의 계좌입금을 통해 후원금을 받은 때에는 법인 명의의 후원금 전용계좌나 시설의 명칭이 부기된 시설장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여 사용 (이 경우, 후원자가 영수증을 원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영수증을 생략할 수 있음)
- 법인 및 시설의 후원금 전용계좌는 반드시 각각 구분하여 사용하고, 구분된 사실을 후원자에게 사전에 반드시 안내

※ 법인 산하의 시설이더라도 법인의 후원금 전용계좌와 별도로 시설 고유의 후원금 계좌를 두어야 함 ('12.6 감사원, "사회복지시설 후원금 등 관리실태" 감사 지적사항)

● 후원 제한

-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 대부분이 취약계층 아동이므로 이용아동 및 아동의 보호자로부터의 후원금(물품)은 가급적 지양

● 후원금의 용도외 사용 금지

- 법인의 대표이사와 시설의 장은 후원금을 후원자가 지정한 용도 이외로 사용할 수 없으며, 사용기준은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함

● 후원금의 보고

-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제19조, 제20조, 제41조의6에 의해 법인의 대표이사와 시설의 장은 회계연도 종료 후 다음연도 3월 31일까지 후원금(품)에 대한 수입 및 사용 내역을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을 입력하고, 후원금 수입 및 사용 결과 보고서(전산파일 포함, 사회복지재무회계규칙 별지 제19호 서식)를 관할 시·군·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 지자체는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을 통해 온라인 보고된 후원금(품)에 대한 사용 내역을 행복e음에서 확인 후 승인 처리하여야 함

● 후원금 공개

- 시·군·구청장은 제출받은 후원금의 수입 및 사용결과 보고서를 제출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인터넷 등을 통하여 3개월간 공개하고, 같은 기간 동안 법인의 대표이사 및 시설의 장도 후원금 수입 및 사용결과보고서를 법인 및 시설의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함

※ 단, 후원자 성명(법인의 경우 그 명칭)은 공개하지 말 것

※ 후원금 보고·공개가 미흡하므로 후원금수입 및 사용결과 보고 및 공개 업무 철저 필요 ('12.6 감사원, "사회복지시설 후원금 등 관리실태" 감사 지적사항)

5. 운영관리

가.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사회복지사업법 제36조)

(1) 구성

● 지역아동센터는 운영위원회를 반드시 설치·운영하여야 하며, 운영에 필요한 세부 운영규칙을 법령 및 지침에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정하여야 함(단, 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사항은 반드시 운영규칙에 포함시킬 것)

● 운영위원회는 시설장 1인을 포함하여 5~10명 이내로 구성하며, 시설장이 추천하여 시·군·구청장의 승인 후 위촉(임기는 3년으로 하되, 시설별로 조정) 가능함 (임기가 새로 시작하는 위원만 해당, 기존 위촉자는 인정)

※ 사회복지사업법시행규칙 제24조 및 '14년도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지침을 준용하여 운영위원회 구성·운영

(2) 운영

● 반기별 1회 이상 정기회의 개최, 운영위원회 운영규칙에 규정한 회의개최 요건에 해당할 경우(재적의원 1/3의 요청이 있을 경우 등) 수시회의 개최

● 회의록을 작성하고, 참석 위원의 날인을 받아 센터 내에 비치하여 이용 아동, 학부모, 지역주민, 종사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공개하되, 개인정보보호 등 불가피한 사유시 운영위원회 위원장이 비공개 결정을 할 수 있음(비공개사유는 공개해야 함)

(3) 심의사항(사회복지사업법 제36조 제1항)

- 시설운영계획의 수립·평가에 관한 사항
- 센터 운영 프로그램의 개발·평가에 관한 사항
- 시설종사자 및 이용 아동의 환경 개선 및 고충 처리 등에 관한 사항
- 시설과 지역사회와의 협력, 후원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시설의 장이 운영위원회의 회의에 부의하는 사항 등

(4) 보고사항(사회복지사업법 제36조 제3항)

- 시설의 회계 및 예산·결산에 관한 사항
- 후원금 조성 및 집행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시설운영과 관련된 사건·사고에 관한 사항

※ 상기 사항 등을 운영위원회에 사전보고하는 것으로, 이는 위원회의 심의를 요하는 것은 아님

나. 개인정보보호

- 지역아동센터는 아동의 개인정보처리자로서, 아동 개인정보의 수집·유출·오용·남용으로부터 사생활의 비밀 등을 보호하여야 함(「개인정보보호법」 제1장 제1조)
- 지역아동센터는 아동 최초 등록시 개인정보활용 동의서에 개인정보가 활용될 수 있는 선택항목(문화체험 시 여행자보험, 사례관리, 홈페이지 활용, 홍보 및 후원 연계의 목적 등)을 정확하게 기입하여 동의서를 받아야 함(「개인정보보호법」 제22조 1항)
  - 위반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개인정보보호법」 제77조 제4항 제 2호)
- 지역아동센터는 퇴소아동에 대한 개인정보문서를 보존기간에 따라 복구 또는 재생되지 아니하도록 조치하고, 보관시에는 개인정보가 유출 및 훼손되지 않도록 문서 보관 기준에 따라 보관하여야 함(「개인정보보호법」 제21조 제2항, 제21조 제3항)
  - 위반시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개인정보보호법」 제75조 제2항 제4호)

다. 문서관리(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사용)

- 지역아동센터는 시설운영, 아동관리(이용등록 등), 프로그램(연간사업계획서, 프로그램계획서, 프로그램평가서 등), 사례관리, 회계관리(후원금, 이용료등)등 시설 전반에 대한 관리를 위하여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을 의무적으로 사용
- 지역아동센터 운영상 필요 문서(운영일지, 공문철, 종사자 인적관련 서류, 아동복지시설 신고증, 아동상담기록부, 사업계획서, 예산·결산서, 총계정원장, 재산대장, 비품대장 등)는 별도의 서류로 구비하여 보관

라. 지역사회자원 활용 및 네트워크 구축

- 지역아동센터는 지역사회 인적자원(자원봉사자 등) 및 물적자원(후원 등)을 적극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하여 시설을 운영
- 지자체 및 지역아동센터는 지역사회 자원 활용을 위한 네트워크를 적극 구축하여 운영

6. 행정처분

- 행정처분의 주체 및 종류

-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시·군·구청장은 행정처분의 요건에 해당할 경우 시설의 개선, 사업의 정지, 시설의 장의 교체를 명하거나, 시설의 폐쇄를 명할 수 있음

- 행정처분의 요건(아동복지법 제56조)
  - 시설이 설치기준에 미달될 때
  -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이 설치·운영하는 시설로서 그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가 취소된 경우
  - 설치목적의 달성이나 그 밖의 사유로 계속하여 운영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 보호대상아동에 대한 아동학대행위가 확인된 경우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경비의 지원을 받은 경우
  - 아동복지시설의 사업정지기간 중에 사업을 한 경우
  -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 행정처분의 기준(아동복지법시행령 제53조 별표13)

행정처분의 기준(아동복지법시행령 제53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차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이하 "처분기준"이라 한다)은 최근 2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 횟수는 위반사항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한 날과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적발한 날을 각각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다.

나. 둘 이상의 위반행위를 한 경우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를 때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

다. 위반행위가 4개 이상이거나 아동에 대한 학대 등 중대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시설의 정상적인 운영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도 불구하고 1차 위반 시에 시설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

라. 위반행위가 시설의 장 교체 또는 시설 폐쇄 명령의 사유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그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거나 그 밖에 상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각각 한 차례에 한정하여 시설의 장 교체를 갈음하여 개선명령을, 시설 폐쇄를 갈음하여 시설의 장 교체 명령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처분은 차수의 산정에 산입하지 않는다.

2.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행정처분 기준		
		1차위반	2차위반	3차위반
가. 시설이 설치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법 제56조 제1항제1호	개선 명령	시설의장 교체	시설 폐쇄
나.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이 설치·운영하는 시설로서 그 사회복지 법인이나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가 취소된 경우	법 제56조 제1항제2호	시설 폐쇄		
다. 설치목적의 달성이나 그 밖의 사유로 계속하여 운영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법 제56조 제1항제3호	시설 폐쇄		
라. 보호대상아동에 대한 아동학대행위가 확인된 경우	법 제56조 제1항제4호	6개월 이내 사업정지	시설 폐쇄	
마.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경비의 지원을 받은 경우	법 제56조 제1항제5호	6개월 이내 사업정지	시설 폐쇄	
바. 아동복지시설의 사업정지기간 중에 사업을 한 경우	법 제56조 제1항제6호	시설 폐쇄		
사.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법 제56조 제1항제7호	개선명령	6개월 이내 사업정지	시설 폐쇄

7. 과태료

● 과태료의 부과기준(아동복지법시행령 제58조 별표14 참조)

과태료의 부과기준(아동복지법시행령 제58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 횟수는 위반사항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한 날과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적발한 날을 각각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다.

나. 부과권자는 위반행위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1)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 등 과실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위반의 내용·정도가 경미하여 사회적 피해가 적다고 인정되는 경우
3) 법 위반 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한 노력이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 부과권자는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늘릴 수 있다. 다만, 늘리는 경우에도 법 제75조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2. 개별기준 (단위: 만원)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1차 위반	2차이상 위반
가. 법 제25조제2항을 위반하여 아동학대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법 제75조제2항	150	300
나. 법 제31조를 위반하여 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법 제75조제1항제1호	100	200
다. 법 제51조를 위반하여 아동복지시설의 휴업·폐업 또는 운영 재개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75조제1항제2호	200	300
라. 법 제69조를 위반하여 아동복지전담기관 또는 아동복지시설이라는 명칭을 사용한 경우	법 제75조제1항제3호	150	300

●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군·구청장이 시설 폐쇄 등 행정처분 조치를 하고자 할 때에는 청문 등 행정절차를 준수하여야 함

※ "행정절차법"상 처분 및 청문(의견청취)절차 참조

8. 보조금 반환명령(아동복지법 제61조)

- 보조금의 환수 주체 및 종류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아동센터에 지급된 보조금의 환수가 필요한 경우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음
- 보조금 환수 요건
  - 보조금의 교부조건에 위반한 때
  -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때
  - 지역아동센터의 경영에 관하여 개인의 영리를 도모하는 행위를 한 때
  - 보조금의 사용 잔액이 있는 경우
  - 아동복지법 또는 아동복지법에 의한 명령을 위반한 때

-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군·구청장이 보조금 반환 등의 조치를 하고자 할 때에는 청문 등 행정절차를 준수하여야 함

※ "행정절차법"상 처분 및 청문(의견청취)절차 참조

Ⅳ 예산지원 및 절차

1. 국고보조금 예산지원

가. 지원대상

- 기존지원시설 : 2013년 운영비 지원시설 중 심화평가 결과 등을 반영하여 선정
- 신규지원시설 : 24개월 운영 신규시설 중 진입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선정

나. 지원기간

- 기존지원시설 : 심화평가 결과 및 지자체 점검결과를 반영하여 1월~12월까지 지원
- 신규지원시설 : 시설 신고일 기준 24개월 해당월부터 12월까지 진입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지원

(예) 진입평가를 통과한 시설의 신고일이 2012년 3월 15일 → 2014년 3월부터 지원)

다. 지원 내역

- 기본운영비 : 아동정원 및 법정상근종사자 수에 따라 월386~527만원 차등 지원
- 특성별 운영비
  - (거점형 지역아동센터) 구간별 기본운영비 월지원액 + 월 140만원*
  - (특수목적형 지역아동센터) 구간별 기본운영비 월지원액 + 월 60만원**
  - (주5일 운영에 따른 토요운영센터) 구간별 기본운영비 월지원액 + 월48만원**

* 추가인력 채용을 조건으로 지원하되, 추가인력 미채용 시 감액(-50만원)하여 지원

** 시군구별 지원 시설수 및 시설 프로그램, 센터규모를 감안하여 차등 지원하되, 단가는 재정한도를 고려하여 특수목적형은 60만원 ±30만원, 토요운영은 48만원±5만원

라. 지원 절차

- 기본운영비 지원대상시설은 '익년도 예산(안) 계상을 위한 수요조사(10~12월) 자료', '평가결과', '시설정보시스템 시설통계 자료'를 통해 시군구 결정
- 선정심사위원회 구성・운영
  - 기본운영비 감액기준 적용 대상시설 및 특성별 예산 지원액 결정시 선정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공정하게 선정
  - 시·도 아동복지담당사무관 또는 담당자(시·군·구 아동복지담당과장), 현장전문가, 아동복지관련 학계인사 등으로 4~6인 이내로 구성
  - 현재 지자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아동관련 위원회로 선정위원회 대체 가능
  - 시·군·구 선정심사위원회의 심사 의견 및 결과를 시·도에 보고

※ 현장전문가는 아동복지업무에 종사하는 관계자로 하되, 이해 관계자인 관내 지역아동센터 종사자는 제외(타 지역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가능)

- 운영비 지급 기준일(시설정보시스템 및 행복e음시스템으로 월별 지급)
  - 국고보조금 교부(보건복지부→시도) : 전월 15일까지 지급
  - 운영비 신청(시설→시·군·구) 및 운영비 현황 보고: 전월 15일까지 신청
    - · 시군구보고→공문작성→보조금→보조금교부신청→교부신청서 접속
    - · 교부신청서 화면에서 본문내용 및 입금계좌 입력
    - · 첨부파일에 '출석부」를 첨부
  - 운영비 지급(시·군·구→시설) : 전월 25일까지 지급
    - · 행복e음으로 신청내역을 확인하여 승인 후 입금계좌로 지급
  - 시설운영(지역아동센터) : 해당월 1일~말일까지 운영

※ 1월 운영비는 예산편성·지급 등을 감안하여 2개월분(1월분과 2월분) 지원하되, 최대한 빠른 기간내 지급하고, 운영비 지급일인 25일이 토요일, 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까지 운영비 지급

마. 감액기준

대상시설		적용방법	감액 비율
기준 위반 시설	법령 위반 시설	· 아동학대·성폭력, 허위 실습확인서 발급 등 법령 위반사항 발생된 시설 적용	100% 이내
	시설·종사자 법령기준 미달 시설	· 시설 개선 유예기간('14.3월말*)을 부여한 후 유예기관 경과 후 미개선 시설 적용	50% 이내
	지침사항 등 경미한 사항 위반 시설	· 시설 개선 유예기간('14.3월말*)을 부여한 후 유예기관 경과 후 미개선 시설 적용	30% 이내
평가 미참여시설	심화 평가 거부시설 (3년이내 평가 거부)	· 거부의사 확정 익월부터 2년간 적용	100%
평가 미흡시설	심화 재평가 최저기준점(60점) 미만시설	· 재평가 결과를 통보받은 날의 익월부터 2년간 자부담 시설 기준 적용	100%

* 지자체에서 별도 유예기간을 부여한 경우 지자체 유예기간 우선 적용

2. 기본운영비 예산지원

가. 기준액 : 신고정원 및 법정상근종사자 수에 따라 월 386~527만원 차등지원

유형별		신고정원 범위	법정상근종사자	'14년 지원 기준액
소규모형(도시)*		19인 이하	2	3,860천원
표준형	읍면	19인 이하	2	4,060천원
	도시	20인~29인	2	
확대형	읍면	20인~29인	2	4,260천원
	도시(읍면)**	30인 이상	3	5,270천원

* 기존 9인 이하 시설(도시, 읍면)은 소규모형 운영비 기준의 60%이내(2,316천원)에서 지자체에서 지원 결정

** 확대형 30인 이상 읍면지역은 예산의 범위내 기준액보다 추가지원 가능

※ 기준액으로 지원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자체사업비 지원은 별도 지원 가능

나. 예산 지원 : 이용아동수(현원)가 신고정원 범위 충족시 지원기준의 기준액으로 지원

- 3개월 평균 이용아동수가 신고정원 범위 미충족시에는 익월에 신고정원을 변경하여야 하며, 정원 변경에 따른 예산은 변경 월의 익월부터 조정 지원

(예) 이용아동 30인 시설의 3개월(1~3월) 이용아동수 평균이 29인일 경우, 시설은 신고정원 범위를 충족하지 못한 달의 익월인 4월중 정원 변경신청하여야 하고, 변경 정원에 대한 예산지원은 5월부터 적용

※ 다만, 정원 확대변경에 따른 운영비 증액은 지자체 예산을 고려하여 추가지원 여부 결정

- 이용아동수(현원) 산정 : 이용등록 아동 중, 월 운영일수(주5일 기준)의 70% 이상 이용아동을 의미함

▪ 아동범위 : 이용아동은 지역사회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만 18세 미만의 아동으로, 아동이용시설(타 지역아동센터 등), 보육시설(유치원 포함), 청소년 공부방 등을 중복 이용하지 않아야 함
※ 다만, ① 부처간 방과후돌봄 연계로 인해 다른 돌봄기관(초등돌봄교실(학교), 청소년 아카데미 등)을 시간대를 달리하여 이용하는 아동은 중복 허용 ② 보육시설 이용아동의 경우 농어촌 등 지역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지자체에서 지역아동센터 이용아동으로 산정 가능
▪ 이용범위 : 출석 / 대체출석 / 공결(학교행사-가정통신문 등/아동 질병 및 부상-진단서, 의사소견서,입원확인서/직계존속이나 친인척의 경조(증빙서류)/지자체장이 인정하는 경우(천재지변 등-공문)까지 인정
▪ 장애아동 산정 : 장애아동 1인은 1.5인으로 가산하여 산정하고 가산하여 산정된 아동수가 5인(장애아동 3인의 경우 이용아동 5명으로 산정)을 초과할 경우 추가된 장애아동의 수 만큼 1명씩 추가 산정(장애아동은 등록 장애인 및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진단·평가 결과 장애 소견자에 한함)

- 법정상근종사자 기준

- 지역아동센터는 법정상근종사자 배치기준을 충족하여야 함

· 법정상근종사자가 육아휴직, 건강악화, 사망 등의 사유로 종사자 배치기준을 한시적으로 충족하지 못한 시설은 전임자 급여*(최저임금 이상)를 제외하고 지급

* 전임자 급여는 퇴직 직전 3개월의 평균 급여로 계산

· 지역아동센터 운영 중에 부득이한 사유로 종사자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해당 지자체에 즉시 통보하고, 지자체 통보없이 보조금 부당 수령시 행정처분 및 해당 인건비 전액 환수

* 지자체는 보조금 지급 시 관련사항을 반드시 사전에 고지

· 단, 종사자 채용이 일시적으로 곤란할 때는 일정기간(농촌 3월, 도시 1월 범위 내) 시·군·구의 승인을 받아 해당 인건비를 아동을 위한 프로그램비로 사용 가능함

3. 특성별 예산지원

가. 지원목적

- 지역아동센터 서비스 수준에 따른 추가지원으로 시설의 운영역량 제고
- 특화서비스 제공 등 차별화 된 프로그램 운영 시설에 대한 지원 강화

나. 지원대상 및 기간

- 2014년 지역아동센터 기본운영비 지원 시설 중 해당 사업 선정대상에 따라 선정되며 약2,400개소 지원
- 지원기간 : 2014년 1월~12월 (12개월)

다. 예산지원 (거점형 및 특수목적형 709개, 토요운영 1,700여개)

- 거점형 지역아동센터 : 구간별 기본운영비 월지원액 + 월 140만원*
- 특수목적형 지역아동센터 : 구간별 기본운영비 월지원액 + 월 60만원**
- 주5일 운영에 따른 토요운영센터 : 구간별 기본운영비 월지원액 + 월48만원**

* 추가인력 채용을 조건으로 지원하되, 추가인력 미채용 시 감액(-50만원)하여 지원

** 시군구별 지원 시설수 및 시설 프로그램, 센터규모를 감안하여 차등 지원하되, 단가는 재정 한도를 고려하여 특수목적형은 60만원 ±30만원, 토요운영은 48만원±5만원

라. 세부내용

(1) 거점형 지역아동센터

- (선정대상) 국고보조 운영비 지원시설 중 운영 역량 및 서비스 제공수준이 높은 시설이나 공립형 지역아동센터로서 1년 이상 운영한 시설

· 시·군·구별 시설이 5개 이상인 경우 1개소, 30개소 이상인 경우 2개소 선정

(다만, 시설이 5개 이상인 경우이더라도 지자체 여건에 따라 미 선정 가능)

- (기능 및 역할) 지역사회의 다양한 인적·물적 네트워크 조직화 등 지역 인프라를 연계하여 지역내 돌봄서비스 수준 향상 제고

<필수사업>

① 지역사회의 다양한 인적·물적 네트워크 조직화

· 시·군·구 지역아동센터 협의체 등 지역아동센터 네트워크 구성·운영

· 시·군·구, 드림스타트 및 지역아동센터중앙(시도)지원단과 협력하여 역량이 미흡한 시설에 대한 민간자원 공동개발·네트워크 지원연계

② 소규모·영세 지역아동센터 운영 역량 지원

· 지역 내 역량이 미흡한 시설에 대한 지역아동센터 운영컨설팅

· 공동프로그램(보호, 교육, 문화, 아동정서지원, 지역사회연계) 개발·운영 등으로 멘토 기관으로서 역할 수행

③ 2014년 신규설치시설에 대한 현장실습 및 운영 컨설팅 지원

<선택사업> 기타 지역사회에서 필요성을 인정하는 공동사업을 주관하여 추진

● (선정기준) 거점형 지역아동센터 선정기준(예시)을 참조, 지자체에서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최종 선정기준 마련

- 운영주체 역량, 운영기간, 시설 여건, 평가·점검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자체기준 마련

- 거점형 지역아동센터의 경우는 사업운영, 시설인프라, 지역사회 연계 등 노하우가 필요하기에 기존 운영시설에 대해서는 재심사 없이 연속하여 선정 가능

※ 복지부에 보고한 최초 선정된 거점형 지역아동센터를 변경해야할 사유 발생시, 반드시 시도를 경유하여 복지부에 사전 보고 후 변경

<거점형 지역아동센터 선정기준(예시)>

① 운영 기간 3년 이상, 신고정원 29인 이상이며, 타 시설 및 시·군·구와의 연계 협력이 유기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시설
② 평가·지자체 점검결과, 운영상 하자가 없고 운영 역량이 우수한 시설
③ 시설 전용면적 120.0㎡ 초과, 법적 시설 요건(사무실·학습지도실·조리실·식당) 외에 도서관, 상담실 등 별도 공간 확보 시설
④ 외부자원 연계, 지역사회 네트워크 구성·운영 등 거점형 센터로서 요구되는 운영실적이 우수한 시설

(2) 특수목적형 지역아동센터

● (선정대상) 원칙적으로 시·군·구별 2개소 선정하되 지원 시설수 및 시설 프로그램을 감안하여 조정 가능

① 장애, 다문화, 새터민 아동의 특수 전용시설을 운영하거나 특수 아동 비율이 타 센터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시설

※ 장애는 등록 장애인 및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진단평가결과 장애소견자에 한하며, 지자체는 특수아동 시설 지원 결정액 내에서도 해당 아동 비율에 따라 별도의 지원 범위 조정 가능

② 중·고생 전용시설이나, 중·고생의 비율(50% 이상)이 타 센터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시설

※ 초·중·고생 혼용 시설은 별도 공간이 있는 시설을 우선적으로 선정

③ 저녁돌봄(20시 이후), 일요일 및 공휴일 운영 등 연장 운영으로 인한 추가 지원이 필요한 경우

※ 저녁돌봄 운영 지원의 경우, 사회복지공동모금회·교육부 지원과 중복되지 않도록 조치

④ 지원대상(①~③)에 한하는 특수목적형 지원으로 시설별 재정지원 강화

● (선정기준) 특수목적형 지역아동센터 선정기준(예시)을 참조하여, 지자체에서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최종 선정기준 마련

- 운영비 지원 시설 중 운영주체의 역량이 뛰어나고, 평가·점검 결과 운영상 하자가 없고, 지원 대상 요건 증빙이 가능하며, 관련 프로그램 운영 실적이 있는 시설

<특수목적형 지역아동센터 선정기준(예시)>

① 지역적·환경적, 이용아동 특성에 따라 특수한 프로그램 운영이 필요한 시설 (장애, 다문화, 새터민, 중고생, 야간, 일요일 및 공휴일 운영 등)
② 지원대상 요건 증빙이 가능하거나 별도 프로그램 운영실적이 있는 시설
③ 평가·지자체 점검결과, 운영상 하자가 없고 운영역량이 우수한 시설
④ 기타 지자체에서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기준

(3) 토요운영 지역아동센터

● (선정대상) 주5일수업제 전면시행에 따라 이용아동 중 토요돌봄서비스 수요가 있거나

토요일 운영 시설 중 운영 역량 및 서비스 제공수준이 높은 시설

- 지역아동센터 개소수의 40~60% 내외에서 배정된 예산 범위 내에서 시군구별 적정 운영 개소 수 및 운영비 등 결정 가능

● (기능 및 역할) 지역사회의 토요돌봄서비스 욕구에 대한 연계 서비스 제공 및 다양한 토요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주5일 수업제 전면시행에 따른 현장대응력 강화

- 지역내 토요돌봄서비스 욕구 조사 및 토요돌봄서비스 제공

  · 지역아동센터 토요운영 프로그램 개발 및 인근 토요 미 운영센터 연계지원

  · 지역사회 토요돌봄서비스 제공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 (선정기준) 토요운영 지역아동센터 선정기준(예시)을 참조, 지자체에서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최종 선정기준 마련(반드시 주6일 이상 운영)

- 운영주체 역량, 운영기간, 시설 여건, 평가·점검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자체기준 마련

<토요운영 지역아동센터 선정기준(예시)>

① 토요돌봄서비스를 1년이상 운영하고 있고 타 센터와 연계가 가능한 곳 (이용아동에 따른 2개 이상의 센터 연계 운영가능)
② 이용아동 중 토요돌봄서비스 예상 이용 아동수가 많은 곳
③ 평가·지자체 점검결과, 운영상 하자가 없고 운영역량이 우수한 시설
④ 10회 이상 토요돌봄서비스 관련 프로그램 운영실적이 있는 시설

마. 지원대상 선정방식

● (시・도) 거점형 및 특수목적형, 토요운영 지역아동센터 지원 세부 운영계획 수립

- 시・도는 지원 대상수, 시설선정 세부기준, 지원금액 등을 포함한 세부 지원 계획 마련(시·도 → 시·군·구)

● (시군・구) 시·군·구는 자체 기준 또는 지역사회의 추천 등을 받아 자격기준을 갖춘 시설에 안내하고 대상시설을 선정

※ 시·군·구는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시설이 지원개소 보다 많은 경우 심사표 등을 활용하여 대상시설 선정

- 신청의뢰 받은 시설은 사업계획서<별도공문시행>를 작성하여 시·군·구에 제출

- 시·군·구는 지원 희망시설의 사업계획서 제출받고, 선정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자체 선정기준에 따라 대상을 선정

- 시・군・구는 배정된 예산(지원개소) 한도에서 선정하되, 거점형 및 특수목적형 등 운영시설 선정하여 선정심사자료 및 선정된 시설의 사업계획서를 시・도에 보고

● (시도) 시·군·구에서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시설에 대한 지원금액 결정

- 시·도는 시·군·구에서 선정된 시설을 대상으로 적격여부에 대한 확인을 거쳐 지원기관 및 지원금액(안) 확정

- 시・도는 확정된 지원기관 및 지원액(안), 각 시설 사업계획서를 보건복지부에 제출

● (복지부) 최종확인, 우수사례 공유 및 운영현황 모니터링

- 시·도로부터 최종결과를 제출받고 확인, 워크숍 개최 등으로 우수사례를 공유, 수시 및 중간 점검을 통해 운영 현황을 모니터링

※ 최초 선정기준 및 사업목적에 적합하지 않게 운영하거나, 운영역량 미흡으로 판단되는 경우 선정을 취소

<거점형 및 특수목적형, 토요운영 지역아동센터 선정절차>

시설 선정 (시·군·구, '14.1.15)	○ 시·군·구에서 거점센터 등 지원 대상 선정 후 시·도 보고('14.1.15) ○ 시·군·구는 시·도의 확정결과 통보에 따라 '14년 1월부터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 대상 확정 및 예산 지원
⇩	
시설 확정 (시·도와 복지부,'14.1월)	○ 시·도는 시·군·구의 선정결과를 확인하고, 복지부 및 시·군·구에 최종 통보('14.1.20) ○ 시·군·구는 시·도 확인에 따라 대상시설에 예산지원
⇩	
정기실적 제출 (시설, '14.7월, '15.1월)	○ 지역아동센터는 실적을 시·군·구에 제출 ○ 시·도는 시·군·구 실적을 취합하여 보건복지부에 제출
⇩	
점검 및 확인 (연 중)	○ 보건복지부, 지역아동센터 중앙·시도지원단 운영실태 현장점검 실시

바. 지원예산 사용기준

- 특성별 지원예산은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사용 기준 및 항목에 따라 집행
- 다만, 특성별 서비스 제공을 위한 전담인력인 신규종사자 인건비로 전액 지출 가능하며, 신규 종사자 인건비를 특성별 지원예산에서 일부 지출한 경우 '남은 예산'은 운영비 사용 기준 및 항목에 따라 집행

사. 공립형 지역아동센터

(1) 정의

-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위탁운영 포함)하는 지역아동센터로서 건물의 소유 또는 권한이 지방자치단체 장에게 있는 시설

(2) 명칭

- 명칭 사용은 시·군·구립지역아동센터 또는 공립지역아동센터·지역아동센터를 사용할 수 있음

(3) 기능 및 역할

- 시·군·구와 시도지원단과 협력하여 지역사회 연계 모델 창출
- 지역특성에 맞는 프로그램 개발 및 관련 종사자 연수 등 지원
- 이용아동 및 종사자 적정수준 운영모델 제시
- 기존 센터와 차별성 있는 운영

(4) 설치 및 운영절차

- 지역 내 방과후 돌봄수요 등을 감안하고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시설수급 계획 등에 따라 선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설치추진
  - 설치 및 운영절차 등은 기존 신규시설과 동일한 기준에 따라 설치

(5) 운영지원

- 운영비 지원시기
  - 설치신고 후 운영시점부터 운영비 지원
- 운영비 지원금액
  - 운영비는 지방자치단체 자체예산으로 지원기준의 50%범위 추가 지원* 가능

    * 단, 종사자 기준은 1명을 추가 배치하여야 하여, 시군구와 시도지원단과 협력하여 지역사회 연계·협력

(6) 운영주체 선정

- 시·군·구 직영운영 또는 위탁운영을 할 수 있으며, 위탁 운영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경험과 전문적 지식이 탁월한 법인이나 5년 이상 지역아동센터 운영경험이 있는 개인도 참여할 수 있도록 추진
  - 합리적인 선정기준 및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선정위원회를 통하여 공정하고 투명성이 확보되도록 선정절차 추진
  - 위탁기간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의2를 참조하여 5년 이내로 하고 시설의 일괄되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가급적 위탁기간은 3년 이상을 권고함

(7) 기타

- 기타 운영 등을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이용아동, 회계규칙 등을 지방자치단체 실정에 맞도록 규정을 제정하여 운영할 수 있음

4. 예산집행기준

가. 정의

- 운영비 국고지원액(이하 "운영비"라고 한다)은 인건비, 운영관리비, 시설비, 프로그램비 등 지역아동센터 운영에 소요되는 국고지원금을 말함

나. 기준

- 인건비와 운영관리비, 시설비를 합한 금액이 기본운영비의 85%를 초과할 수 없음
  - 프로그램비는 운영비의 15% 이상을 반드시 지출하여야 함
- 사용기준에 열거된 항목 이 외에는 원칙적으로 사용 불가
  - 지자체와 협의 없이 사용한 경우, 해당금액 전액 환수 조치

다. 사용 기준

- 인건비 사용
  - 인건비는 종사자 채용 수에 따라 차등하여 지급한도 설정
  - 시설은 역할, 근무연차에 따라 차등하여 인건비를 지급할 수 있으나, 채용된 상근 종사자(생활복지사)에게 인건비 최저기준*을 적용함(권장사항)

    * 종사자 처우관련 참조하고 '13년 종사자 인건비 최저임금기준 : '13년 사회복지이용시설(복지관) 종사자 보수체계(안) 별표 5(복지관직원-관리직) 봉급지급 기준표 3급 1호봉 기준을 적용함
  - 시설은 종사자에 대하여 국민건강보험 등 사회보험에 가입하여야 함
  - 시설은 종사자 퇴직시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금을 지급해야 함
    - 적용 예외 : 대표자 겸 시설장, 근로기간 1년 미만, 주당 근무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

▶ **퇴직금 산정방법**

· 계속 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설정

* 1년미만의 퇴직자의 퇴직적립금의 경우 당해연도 분은 시·군·구청의 사전승인 후 프로그램비로 사용이 가능하며 전년도 적립금은 반드시 반납하여야 함

- 운영비 사용
  - 운영비는 시설 운영에 필요한 여비, 수용비 및 수수료,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차량비, 연료비를 말함
  - 시설의 월세, 차량 취·등록세, 자동차세, 각종단체 및 협의회 회비(연대활동비) 등은 보조금에서 지출 불가
  - 운영비는 분할납부 지출이 불가하며, 물품구매시 취득단가 30만원 이상은 지출 불가함 (단, 아동 전용으로 사용하는 차량정비유지비 및 차량보험료의 취득단가는 100만원 미만으로 하며, 총 금액 내에서 분할납부 가능함)

  ※ 지역아동센터의 경영에 관하여 개인의 영리를 도모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보조금 환수(아동복지법 제61조)

- 시설비 사용
  - 시설비는 시설장비유지비와 자산취득비를 말함
  - 시설장비유지비는 분할납부 지출이 불가하며, 물품구매시 취득단가 30만원 이상은 지출 불가함 (단, 아동 전용으로 사용하는 화장실 등 시설 일부 개·보수비용은 지자체 판단에 따라 금액 및 분할납부 가능하며, 아동 학습용 컴퓨터·복사기는 취득단가 총 금액 100만원 미만으로, 분할납부 가능함)

  ※ 지역아동센터의 경영에 관하여 개인의 영리를 도모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보조금 환수(아동복지법 제61조)

- 프로그램비의 사용 : 이용아동의 보호, 교육, 문화 등 프로그램에 소요되는 비용

- 본 지침의 운영비 사용기준 이외의 예산·지출 처리는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 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하여 집행

<운영비 사용기준>

관	항	목	기준 및 내역	제한 규정
사무비 (85% 이하)	인건비	급여	ㅇ 법정종사자 인건비(사회보험, 퇴직적립금 포함) * 고용된 시설장, 생활복지사 인건비 최저기준, 근로기준법 및 관련고시 준수 ㅇ 거점형 및 특수목적형, 토요운영 지역아동센 신규 인력 인건비 지출	ㅇ 대표자겸 시설장인 경우 퇴직금 지급 불가(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2조, 근로기준법 제2조)
		사회보험 부담금		
		퇴직적립금		
		제수당	ㅇ 거점형 및 특수목적형, 토요운영 지역아동센터 기존인력 수당은 제수당으로 처리	
		기타후생경비	ㅇ 상근 종사자 교육비 * 복지부·지자체, 중앙 및 시도지원단 주관 교육 *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ㅇ기타교육비 지출 불가
	운영 관리비	여비	ㅇ 종사자 교육 여비 * 복지부·지자체, 중앙 및 시도지원단 주관 교육 *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ㅇ기타교육 여비 지출 불가
		수용비 및 수수료	ㅇ 사무용품비, 인쇄비, 집기구입비(소모품으로 성질상 자산취득비가 아닌 경우), 도서구입비, 공고료, 수수료, 등기료, 운송비, 통행료 및 주차료,소규모 수선비,포장비 등 * 물품구입시 취득단가 30만원 미만으로 한정	ㅇ시설의 월세 지출 불가 ㅇ취득단가 30만원 이상 구입 불가 ㅇ분할납부 구입 불가
		공공요금	ㅇ 우편료, 전신전화료, 전기료, 상하수도료, 가스료 및 오물수거료, 시설의 냉난방 연료비(가스·전기·기름) * 센터 전용공간에서 사용한 비용만 인정	
		제세공과금	ㅇ 화재·자동차보험료, 아동 안전관련 보험 * 화재 및 아동 안전관련 보험은 운영비 중 1순위로 집행	ㅇ자동차보험료는 지역아동센터 명의의 차량만 지출 가능 ㅇ차량취·등록세·자동차세 지출 불가 ㅇ각종단체 및 협의회 회비(연대비) 지출 불가
		차량비	ㅇ 차량유류대, 차량정비유지비, 차량소모품 * 차량유류비는 명의와 상관없이 시설운영용으로 사용한 경우 지출 가능(차량운행일지 및 유류수불대장 작성·관리)	ㅇ차량정비유지비(소모품비 포함)의 경우 농산어촌의 경우 지자체 판단에 따라 사용 가능

관	항	목	기준 및 내역	제한 규정
	시설비	시설장비 유지비	ㅇ화장실 등 일부 시설개보수비	ㅇ화장실 등 일부 시설개보수의 경우 지자체 판단에 따라 사용 가능
		자산취득비	ㅇ 시설운영에 필요한 비품구입비 * 비품구입시 취득단가 30만원 미만으로 한정 * 단, 아동 학습용 컴퓨터· 복사기는 100만원 미만 지출 가능 (총액 100만원 분할납부 가능)	ㅇ취득단가 30만원 이상 구입 불가(컴퓨터, 복사기 100만원 미만)
사업비 (15% 이상)	프로그램비	보호 프로그램비	ㅇ 아동복리후생비(위생 및 의료지원 등)	
		교육 프로그램비	ㅇ 학습 및 예체능교육비(강사비 가능)	
		문화 프로그램비	ㅇ 문화·체험 활동비(강사비 가능) ㅇ 야외현장체험활동비	
		정서지원 프로그램비	ㅇ 상담지원(프로그램운영 등), 부모교육	
		지역사회연계 프로그램비	ㅇ 지역자원 연계를 통한 아동지원 프로그램	

V 지역아동센터 평가

1. 목적

- 지역아동센터의 공공성 및 책무성 제고
- 지역아동센터 역할 및 기능에 맞는 서비스의 질적 관리 강화
- 지역아동센터 관련 제도개선을 위한 기초자료 확보

2. 근거

- 사회복지사업법 제43조의2 및 동법 시행규칙 제27조의 2,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

3. 평가개요

가. 평가대상

- 진입평가 : 1년 이상 10인 이상 이용아동에 대한 운영 실적이 있는 신규시설
- 심화평가 : 정부보조금지원 시설 중 3년 이상 운영 실적이 있는 기존시설

나. 평가기간

- 3년마다 1회 심화평가 실시되며, 평가센터는 정부보조금 지원시설 중 휴지 후 재개시설, 운영주체 변경신고 시설에 대하여 별도 심화평가 대상 확인

다. 평가비용

- 지자체 예산에 따라 해당연도 진입평가와 심화평가 대상시설 선정하고 전액 지원. 다만, 평가결과에 따른 재평가 비용은 해당시설 전액 자부담

라. 평가 미참여시설

- 평가 연기시설(진입/심화평가 공통 적용)
  - 천재지변, 종사자 사망 등의 사유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평가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 해당
  - 시·도 확인을 거쳐 연기확정 후 익년도 평가에 참여
- 평가 거부시설
  - (진입평가) 관련 법령*에 따라 개선명령(1차 위반) 실시 후 익년도 진입평가 우선 대상으로 선정하고, 익년도 평가 거부 시 사업정지(2차 위반) 및 해당 시설의 이용자 전원 조치

    * 사회복지사업법 제43조의2, 아동복지법 제56조 제1항 제7호 및 동법 시행령 제53조 별표13
  - (심화평가) 평가 거부시설은 심화 원평가 결과통지 익월부터 운영비 및 아동복지교사 지원 중단
    - **(절차)** (평가센터) 심화 원평가 기간 종료시점까지 평가를 거부한 시설 확인 즉시 관할 지자체에 공문 통보 → (지자체) 심화 원평가 결과를 근거로 거부 의사 최종확정, 행정사항 등을 복지부·시설·평가센터에 공문 통보
    - **(지원재개)** 지원중단 2년이 되는 월의 익월부터 평가결과에 따라 운영비 등을 지원하고, 차기 평가거부시 관련 법령에 따른 후속조치

      (예) 심화평가 거부 결과통지일 '14.6월인 A시설은 2년 이내(('15 또는 '16) 평가 통과해야 하며 통과시 지원중단 2년('14.7~'16.6) 익월인 '16.7월부터 지원
- 평가지표체계

구분	평가지표 체계	영역 및 배점(100점 만점)
진입평가	3개 영역 (5개 분야, 11개 지표)	아동 및 서비스 영역(5개 지표/50점) 시설 및 기관운영 영역(5개 지표/45점) 종합평가(1개 지표/5점)
심화평가	5개 영역 (6개 분야, 15개 지표)	운영기반 영역(3개 지표/10점) 프로그램 영역(4개 지표/35점) 아동 영역(6개 지표/45점) 자원 영역(1개 지표/5점) 종합평가(1개 지표/5점)

● 평가방법

- 자체평가 : 평가대상 시설이 평가지표에 따른 자체 평가서 작성 후 평가센터 온라인 입력(www.icarevalue.or.kr)제출

  * 평가일정에 따라 자체평가서 입력기간은 대상시설에 별도 공지되며, 온라인 모의평가 지원됨

- 현장평가 : 시도 교차평가로 평가조가 시설을 방문하여 대상시설의 자체평가서를 바탕으로 평가지표별 관련서류를 확인하며 평가진행

● 평가위원

- 2인(학계전문가 1명, 현장전문가 1명)을 1조로 편성되며, 시도별 (시도지원단) 추천을 통하여 평가센터에서 당해연도 평가시설수에 따라 확정하여 운영

4. 추진체계

● 기관별 업무(역할)

구분		주요 담당업무
평가 운영	보건복지부	·평가업무 총괄(평가업무위탁, 평가계획수립, 평가편람 확정 등) ·종합평가결과 활용 및 정책반영
	시·도	·평가위원 추천·확정 및 시·군·구에 대한 평가 지원 ·평가결과 활용 및 정책반영
	시·군·구	·평가대상시설 선정 및 시·도 보고 ·평가시설관리, 점검시행 등 평가결과 활용
평가 진행	지역아동센터 평가센터	·평가편람 · 평가지표 업무지원 및 평가 대상시설 지자체 사전통보 ·평가대상시설 설명회, 평가위원구성, 평가위원 교육·관리 ·자체평가 · 현장평가, 모니터링 지원 및 온라인평가시스템(DB) 관리 ·평가결과 보고 및 종합평가 결과보고서 작성
	지역아동센터 중앙·시도지원단	·평가위원 추천 및 관리 ·현장평가지원(평가안내 및 홍보, 현장평가모니터링 등) ·평가대상 시설 교육 및 운영컨설팅 진행

● 평가진행절차

단계	내용	주체
평가대상선정	· 평가대상시설 선정 및 통보 · 평가비용교부(지자체→ 평가센터)	복지부
평가준비	·평가대상시설 평가설명회 및 평가사업 안내 ·평가위원 선정 및 교육	복지부 (평가센터)
평가신청	·평가신청서 및 자체평가서 작성·입력(DB)	평가대상시설
현장평가	· 온라인 및 현장방문평가 결과 심의 (평가결과 이의제기 및 보정) * 시 도 교차평가로 진행 * 공무원 평가 수행 권장	복지부 (평가센터)
평가결과심의	·확정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결과 최종 심의	복지부 (평가센터)
평가결과통지	·평가결과통지 ·정부보조금 지원 반영, 컨설팅지원 등 평가활용	복지부 (평가센터) 지자체
재평가실시	·재평가 신청서 및 자체평가 제출, 평가비용 납부 *반드시 운영컨설팅 의무참여 후 재평가 실시	재평가대상시설
평가결과 정리 및 보고	- 평가센터 : 평가 결과 정리 및 보고 - 복지부 : 평가결과종합보고서 작성 및 정책방향 수립	평가센터, 복지부

● 평가일정

단계	일정	평가 주요절차 및 일정	추진체계
평가 준비	‘13.12	• **2014년 평가계획수립** - 평가계획 및 평가편람 마련(’13.12월) - 평가설명회 진행(진입1회,심화6회)	-보건복지부 -평가센터
	‘14.1	• **평가대상시설 선정(’14.1.15)** • **평가비용 납부(’14.1.24)** • **평가위원 선정(’14.1월말)**	-지지체→평가센터
	‘14.2	• **평가위원교육** - 진입평가 (’14. 2월 2주) - 심화평가 (‘14. 2월 4주) • **자체평가서 작성 및 입력** - 진입평가 (‘14. 2월 1주) - 심화평가 (‘14. 2월 3주)	-평가센터 -평가대상시설
평가 실시	‘14. 2~5	• **현장방문평가** - 진입평가 (’14. 2월 3주~ 4주) - 심화평가 (’14. 3월 3주 ~5월 3주) • 이의제기 접수(현장평가 후 5일이내)	-평가센터
평가 결과통보	‘14 3.~6	• **평가결과 데이터 산출 및 통보** - 진입평가 (’14. 3월말) - 심화평가 (’14. 6월말)	-평가센터 → 평가대상시설
재평가	‘14 7~9	• **재평가** - 진입재평가 (’14. 7월 4주~8월 2주) - 심화재평가 (’14. 8월 3주~9월 2주)	-평가센터
재평가 결과통보	‘14 8~9	• **재평가 결과통보** - 진입평가 (‘14. 8월말) - 심화평가 (‘14. 9월말)	-평가센터 →평가대상시설
종합평가 결과보서	‘14 10~11	• **종합평가결과보고서작성**(’14.10~11)	-평가센터 → 보건복지부
익년도 평가준비	‘14.12	• **2015년 평가계획수립** - 평가계획 및 평가편람 마련 (’14.12월) - 평가설명회 진행 (‘14. 12월)	-보건복지부 -평가센터

5. 평가결과

● 평가결과는 절대평가 지표에 따라 점수산정, 최저기준점은 60점으로 함

● 평가결과에 따라 non-pass(60점미만), 미흡(60~70점미만), 보통(70~80점미만), 양호(80~90점미만), 우수(90점이상)으로 분류

※ 평가결과통보는 온라인을 통해 해당시설에서 개별 확인가능

6. 평가결과 활용

● 평가결과에 따라 정부보조금 및 컨설팅지원, 재평가실시, 정책수립 반영 등 활용

● 평가결과 최저기준점(60점)이상 시설 : 운영비 기준에 따라 운영비 지원

- 단, 미흡(60~70점미만)시설은 운영비 지원하되 시설운영역량 제고를 위해 컨설팅 의무참여

● 평가결과 non-pass(60점미만) 시설 : 평가결과(진입, 심화) 60점 미만 시설은 시설운영 역량 제고를 위해 운영컨설팅 의무참여 후 재평가 실시하고, 그 비용은 전액 자부담

* 재평가대상시설은 운영컨설팅 미참여 시, 재평가 참여가 불가함으로 반드시 운영컨설팅 참여해야 함

● 재평가 결과 non-pass(60점미만) 시설

- 진입평가: 익년도 진입평가 우선 대상 선정

- 심화평가: 재평가 결과를 통보 받은 날의 익월부터 2년간 자부담시설로 함

Ⅵ 협조사항

1. 지자체

가. 지자체 제출사항

- 시·도는 운영비 지원현황 등을 취합하여 보건복지부로 보고

  ※ 제출내용, 방법, 제출양식 등 관련 사항 별도 공문 시행

- 시설 관련 문제 발생시 신속한 보고 체계 유지(수시, 시·군·구, 시도→보건복지부)

  - 시·군·구는 시설 관련 비리, 운영상 문제 발생, 언론보도 등의 문제 발생시 보건복지부 아동권리과로 신속히 보고

- 외부감사(감사원, 복지부 감사담당관실 등) 및 내부감사에 대한 이행여부 파악을 위해 사후관리 조치결과를 상 · 하반기 복지부로 통보

나. 지자체 협조사항

- 지자체는 지역아동센터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시설의 운영상황, 아동보호·지도 실태, 안전점검, 예산집행 실태 등에 대해 현지점검 실시

  ※ 지자체 점검결과는 시도에서 취합하여 보건복지부로 제출(별도 공문시행)

- 지자체는 보조금 환수, 행정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 행정절차법 등 관련법을 준수하여 처리

- 신규 시설 운영컨설팅 의무화에 따른 조치사항

  - 시·군·구는 신규시설 신고증 교부 후 10일 이내에 시도지원단에 컨설팅 의뢰서 공문 송부

- '14년 지침 관련 준수사항 시설에 교육

  - 시설운영과 관련한 변경된 지침사항에 대해 시설에서 충분히 숙지할 수 있도록 안내

2. 시설

가. 지자체 보고사항 협조

- 시설은 '14년도 지역아동센터 운영계획 및 운영위원회 설치현황 제출 (시설→시·군·구, '14.2.28까지)

- 지자체는 조례, 지침 등에 근거한 지자체 제출사항을 성실하게 이행

- 종사자 임면, 겸직신고, 예산집행 등 지자체의 사전 확인을 받아야 하는 사항을 인지하고,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관련사항을 사전에 고지

나. 시설 협조사항

- 시설은 지자체 및 지원단에서 조사하는 각종 정책조사에 성실하게 참여하여, 향후 정책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협조

- 지역아동센터 운영자는 종사자들이 충분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교육 안내, 교육 여비지급, 대체인력 투입 등의 조치 이행

- 지역아동센터 휴·폐지시 이용아동들이 지속적인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조치

  - 보호자에게 중단 예정계획을 통보하고, 인근 이용가능 돌봄 시설의 이용가능 인원, 위치 및 차량 운행여부 등을 확인하여 안내

참고

지역아동센터 전세자금 지원사업에 대한 운영

- 사업목적 : 지역아동센터에 전세자금을 지원함으로써 지역아동센터의 주거환경 개선과 안전성 및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 지역아동센터의 활성화를 꾀하기 위함

- 사업개요 : 저소득 밀집지역 등 열악한 시설여건의 지역아동센터에 시설전세자금 지원을 통해 시설여건 개선

  - 지원대상 : 총 253개소 12,675백만원

  (서울37, 부산15, 대구5, 인천12, 광주18, 대전9, 울산7, 경기39, 강원13, 충북15, 충남14, 전북15, 전남21, 경북8, 경남17, 제주8)

  - 지원예산

    · 지원단가 : 서울 80백만원, 지방 50백만원

    · 보조율 : 복권기금 100% 지원

  - 지원체계

    · 보건복지부 : 전세자금지원계획 수립·시행, 복권기금 교부, 사업추진결과 분석·평가

    · 시·도 : 지역내 전세자금지원계획 수립·시행, 선정위원회 구성, 심사 및 선정, 복권기금 교부 신청 및 집행, 사후관리

    · 시·군·구 : 지원신청서 접수 및 시·도에 제출, 현장확인, 전세계약 체결, 지원시설 입주관련 세부사항진행, 전세권 설정·관리, 지원시설 사후관리

    ※ 지자체에서 전세권 관리, 지역아동센터는 시설 무상임대 사용의 방법으로 운영

- 전세자금운영

  - 지원기간과 연장 : 전세자금 지원기간은 전세 계약체결일로부터 2년간을 원칙으로 하되, 운영이 양호하며 지속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2년 단위로 재계약체결 가능(지자체판단)

  - 지원대상 선정방법 및 절차

① 시·군·구는 사용계약 해제(해지), 시설운영 중단 등으로 시설운영자가 퇴거한 경우 그 명단을 시도에 통보하고, 신규 시설운영자 선정을 의뢰

② 지자체는 자체 게시판,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희망자 신청을 받아 추진

③ 시·도(시·군·구)는 전세금 지원대상 우선순위에 의하여 선정

  - 시·도(시·군·구)는 지역실정에 따라 점수에 의한 평가를 하는 등 자체 선정기준을 마련하여 운영할 수 있음

  - 기존 사용자가 퇴거한 경우의 시설 사용자 선정은 선정위원회를 구성하지 않고 시·군·구의 의견 등을 참고로 하여 시·도에서 공정하게 선정 결정 가능

  · 다만 시·군·구의 요청, 지역실정 등에 따라 시·군·구에서 지원대상시설을 선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시·군·구에서 선정 가능

  - 시군구에서 선정한 경우 결과를 시·도지사에게 보고하고, 시·도지사는 최종 승인

④ 시·군·구는 시설운영자에게 통보 및 사업 추진

⑤ 전세임대 계약 체결 : 시·군·구청장 명의로 건물소유자와 계약

⑥ 전세임대 사용계약 체결 : 시·군·구청장명으로 시설운영대표자와 사용계약 체결

⑦ 전세자금 지원 시설 운영실태 점검 등 사후관리(시·도, 시·군·구)

시군구는 전세자금을 반납받아 새로운 시설에 지원할 경우 시도에 전세자금 여입이 가능한지를 확인하고, 여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시도의 위임을 받아 자체적으로 지원 대상을 선정하거나 시도를 거쳐 복지부에 반납

다음의 경우 체결된 사용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 할 수 있음

1. 전세자금 임차건물을 목적외로 사용한 경우
2. 시설운영자가 제출한 서류에 중대한 허위나 거짓된 내용이 있는 경우
3. 전세자금 지원사업이 중지되거나 목적달성이 불가능한 경우
4. 시설운영자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위반한 경우
5. 시설운영자의 사정으로 본계약이 해지된 경우
6. 허위 또는 부정한 수단으로 전세시설의 임차 및 사용계약을 체결한 경우
7. 월세, 제세공과금이 있는 경우 3월 이상 납부하지 아니하여 시설운영에 중대한 문제가 있는 경우
8. 사용계약기간이 개시된 날부터 3월 이내에 입주하지 아니한 경우
9. 사용시설을 전대하거나 사용권을 양도하는 경우
10. 기타 임대차 및 사용계약에 정한 사항을 사용인 또는 임대인이 위반하는 경우
11. 전세금, 담보액 등이 시가의 80%를 초과하여 시설 이전을 요구하였으나, 시설 운영자가 이를 거부하거나 동일 건물에서 운영을 지속하는 경우(신설)

- 반납액에 따른, 신규 추가수요가 없을시에는 국고로 반납
  (시·군·구 → 시·도 → 보건복지부)

- 기타 운영 참고 사항

  - 전세권 설정비용, 공인중개사 수수료(임차인 부담분) 등 전세자금지원에 소요되는 직접비용은 시설 운영자가 부담

  - 전세임대 계약 체결시, 시·군·구청장 명의로 건물소유자와 계약 : 전세자금 지원액 상향조정액 범위를 초과하는 건물을 계약하는 경우에는 초과액에 대하여는 시설 운영자가 부담하며 전세임대 및 사용계약서에 이를 표시하여 공증하며 사업 종료시 시설 운영자에게 반환

  - 전세계약 체결 전에 당해 주택에 대한 근저당권 및 압류 등 임차기간 종료시 전세보증금 반환 저해요소 여부를 확인하고, 전세계약시 전세권 설정, 보증보험 등을 통하여 전세금 회수장치를 마련함

  - 시·도(시·군·구)는 시설운영자의 의견 및 제출서류를 검토하여 전세시설을 선정함에 있어 안정성과 안전상에 있어 하자가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함

※ '지역아동센터 전세자금 지원사업 현황 파악 및 지침보완' 참고(보건복지부 아동권리과-1351, 2011.3.29.)